

## 제5장 경관설계지침

---



1. 경관설계지침 개요
2. 건축물 경관설계지침
3. 오픈스페이스 경관설계지침
4. 옥외광고물 경관설계지침
5. 공공시설물 경관설계지침
6. 색채 경관설계지침
7. 야간 경관설계지침
8. 간선도로 경관설계지침
9. 조망 경관설계지침



## 1. 경관설계지침 개요

### 경관설계지침의 성격

- 경관설계지침은 해당 지역에 대한 경관자원을 보전, 관리, 형성하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최소한의 원칙을 담고 있음
  - 따라서 설계자 및 일반시민들에게 지역에 대한 바람직한 경관상을 제시하여 경관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유도적 지침임

### 경관설계지침의 목적

- 주변 경관자원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경관적 배려가 이루어진 건축물과 시설물의 조성 유도
- 동일 경관관리구역 내 설계자에게 기본구상 단계에서부터의 주변경관에 대한 배려를 하도록 유도
- 일반시민에게는 주변 경관 및 환경에 대한 경관적 배려방법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도록 함

### 경관설계지침의 체계

-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변화하고, 시간과 문화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적인 개념인 경관의 특성상 경관관리방법을 규제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당진시 전반에 걸쳐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원칙 및 기준을 통해 경관관리를 유도하고,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기준을 적용하고 검증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경관설계지침의 기본 원칙

#### 방향별 기본원칙

- 보전 : 산지, 해안, 하천, 저수지, 농경지 등 자연경관자원의 보전
- 관리 : 기존 시설에 대한 경관적 정비 및 관리
- 형성 : 새로운 경관의 창출을 위한 디자인

#### 거리별 기본원칙

- 원경 : 시원한 조망을 고려한 경관디자인
- 중경 : 통일감 있는 가로경관 디자인
- 근경 : 개성있는 시설물 형태 및 쾌적한 공간

#### 요소별 기본원칙

- 형태 : 단독 개성과 전체 일관성이 조화된 형태 디자인
- 재료 : 친환경을 고려하고 부위간 조화를 고려한 재료
- 색채 :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색채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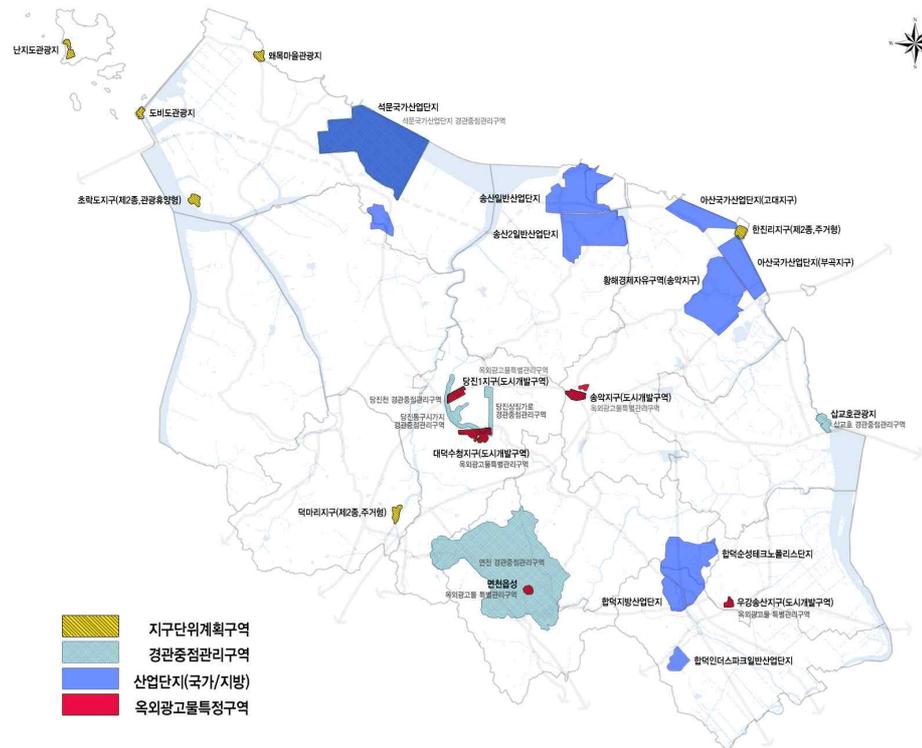
## 경관설계지침의 적용

### 특별관리구역의 우선 적용

- 당진시 전체는 일반관리구역의 경관설계지침을 적용하되, 특별관리구역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구역 경관설계지침을 우선 적용
  - 일반관리구역 : 당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구역
  - 특별관리구역 : 당진시에서 전략적으로 경관관리가 필요한 구역

### 특별관리구역

- 경관중점관리구역 : 당진동 구시가지, 당진천 주변, 석문국가산업단지, 삼교호 관광지, 면천읍 성 주변, 당진시청사 가로변
- 지구단위계획구역(제 1종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 도시개발구역 : 당진1지구, 대덕수청지구, 송악지구, 우강송산지구
  - 관광형 : 난지도, 왜목, 도비도, 초락도, 안섬포구
  - 주거형 : 덕마리지구(신성대학 주변), 한진리지구
- 산업단지 : 석문국가산단, 아산국가산단(고대, 부곡), 황해경제자유구역(송악지구), 송산일반산단, 합덕 지방산단, 합덕 순성테크노폴리스단지, 합덕 인더스파크 일반산단
-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 당진 1지구, 대덕수청지구, 반촌지구, 송악지구, 우강송산지구, 면천 역사문화지구
- 경관협정구역 : 향후 추가 지정



### 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구분 적용

- 당진시는 도농통합시로서 향후 특정경관계획 수립시 경관설계지침 적용에 있어서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높음

- 농어촌경관계획수립지침(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촌 정비법에서 정하는 농어촌과 준농어촌
- 농어촌정비법 제2조 1항 : “농어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함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 :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함
  - 가. 읍·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농어촌정비법 제2조 2항 :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함

- 산림경관계획수립지침(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포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 1. “산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다만, 농지, 초지(草地),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임목(立木)·죽(竹)과 그 토지는 제외
  - 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임목·죽과 그 토지
  - 나.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임목·죽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
  - 다. 임목·죽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
  - 라.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이하 “임도(林道)”라 한다]
  -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와 소택지(소택지: 늪과 연못으로 둘러싸인 습한 땅)

- 관련법에서는 농어촌지역과 산림경관수립대상지역을 행정구역과 관계법상 토지의 이용의 목적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있는 바, 향후 확정된 공간내에서 다양한 경관요소에 대한 경관관리를 행하기 위해서는 그 실효성이 미흡함
- 따라서, 관련 특정경관계획의 실행가능성을 담보하고, 당진시의 경관행정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경관계획의 경관설계지침에서는 국제법상 도시지역을 경관설계지침의 도시지역으로, 국제법상 도시지역 외지역을 농어촌지역으로 설정하여 적용함
  - 국제법 용도지역상 도시지역 : 기본경관계획 설계지침 상 도시지역 적용
  - 국제법 용도지역상 도시지역 외 지역 : 기본경관계획 설계지침 상 농어촌 지역 적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6조 국토의 용도구분
  1. 도시지역: 인구나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7조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1. 도시지역: 이 법 또는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정비·보전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시행하여야 한다.

## 2. 건축물 경관설계지침

### 기본방향 및 원칙

#### 기본방향

- 현황분석을 바탕으로 용도특성에 부합하는 건축물 경관형성 지침을 제시하여 향후 개발되는 건축물간의 관계를 서로 조화롭도록 관리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개별적 민간건축물 및 공공 건축물의 경관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

#### 대상

- 주거건축물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 용도의 건축물
- 상업업무건축물 : 상업용지 내 건축되어 상업 및 업무를 위한 용도의 건축물 (제1,2종, 기타 근린생활시설)
- 공업건축물 : 공업용지 내 건축되어 산업활동을 위한 용도의 건축물
- 공공건축물 : 관공서, 학교, 문화시설 등 공적 용도의 건축물

#### 기본방향

##### 주변과 조화롭고 균형있는 건축물 계획

- 기존의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건축물의 배치, 규모, 높이, 형태, 외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적용

##### 다양하고 변화감 있는 디자인 유도

- 획일적인 건축물의 형태 지양, 주변과의 조화 속에 개성과 다양성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을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가이드라인 도입

##### 자연 친화적 환경 조성

- 자연 지형의 훼손 최소화 등 환경을 고려하고, 건축물 녹화 및 조경 식재 등으로 녹지를 확보하여 친환경적인 공간을 조성

#### 구성요소별 원칙

- 부지조성 : 자연지형의 훼손 최소화
- 배 치 : 경관의 연속성을 고려한 건축물의 향과 배치 유도
- 규 모 :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고려한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
- 형 태 : 가구(block)별 건축물의 형태적 균형 유도, 저층부 및 지붕(옥탑부) 등의 일관성 고려
- 입 면 : 가구(block)별 건축물의 입면의 조화 유도, 재질의 본연의 느낌을 살릴 수 있도록 유도
- 외부 공간 : 공공공간의 연계성, 접근성, 개방성을 고려, 외부공간(건축선 후퇴부)에 조성되는 공작물, 시설물 등의 경관 고려

## 사용방법

### 목적

- 특성있는 건축물 디자인과 전체적으로 통일된 건축군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당진시의 건축 경관을 연출

### 적용방법

- 전체적인 통일성 유지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건축물 디자인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적용하며, 건축심의를 득하여 사용

### 사용대상

- 건축물 허가권자, 건축심의회위원회, 건축설계자, 디자이너 등 건축물 설계, 시공, 심의, 허가를 담당하는 모든 건축물 관련자

### 사용시기

- 건축물의 디자인 단계부터 사업승인 신청, 심의, 허가, 심고시 사전 검토

### 예외사항

- 건축물의 형태색채디자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건축물 심의회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사용

### 주의사항

- 건축물의 형태, 배치, 색채, 재질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위계를 설정하고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은 공공성을 가지도록하며, 대형건축물은 독창성을 적용

## 경관설계지침 사용기준

기준	내용
필수기준	권한을 위임받은 공적 주체가 도시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이행하는 최소한의 규제적 기준
권장기준	강제적으로 개인권리를 제한하고, 이해조정의 측면에서 유연하며 개별적인 행위를 위한 유도적 기준

## 경관설계지침 사용부문

기준	내용
공공부문	공원녹지나 도로 등 공공이 직접 만들어가는 부문
민간부문	민간의 다양한 개발행위를 규제, 유도해가는 부문



## 단독주택 경관설계지침

### 기본방향

#### 원경

- 지붕의 녹화 및 친환경적인 이미지 구현
- 지붕의 형태 및 색채를 통일하여 정돈된 이미지 연출

#### 중경

- 블록내 건축선 통일
- 블록 내 1층부 높이를 통일하여 정돈된 이미지 부여

#### 근경

- 건축선 이격을 통한 보행성 향상
- 전면공지에 공공공간 확보

## 경관설계원칙

###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 기존 주택이 가지는 규모와 형태를 고려하여 건축물 설계
- 주택단지 또는 가구(block)별 정체성(identity) 형성

### 다양함과 통일감이 공존하는 건축경관 형성

- 단조롭지 않고 다양하면서도 단지나 마을 안에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적 주거경관 조성

-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건축물 배치를 통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

### 개방적이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조화로운 가로경관의 형성을 위하여 개방감 있고, 정돈된 외부 공간 형성

## 적용 범위 및 대상

- 적용범위 : 신규로 건축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 적용
- 적용대상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을 대상으로 함



높낮이 변화가 있는 경사지붕



담장 미설치로 개방감 확보



단독주택단지의 클러스터화

일반관리구역 설계지침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비고	
부지조성	· 가능한 자연형 사면구성, 옹벽 및 절토 발생의 최대한 억제		○	공통	
	· 절토시 단면형상은 다단으로 나누어 처리하고 식재 피복		○	공통	
	· 옹벽에는 위압감 저감위해 조경석 쌓기 및 경사면 녹화	○		공통	
배치	· 경관의 연속성을 위한 가구별 건축선 일치		○	도시	
	· 자연에 순응하는 형태로 배치		○	농어촌	
	· 주변경관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을 갖도록 함		○	농어촌	
	· 전면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최소 3m이상 이격하여 건축물 배치	○		공통	
	· 가로경관 형성을 위해 도로에 면한 경우 전면성 유지	○		도시	
	· 주택의 외부공간은 도로 등 공공공간과 연계하여 배치	○		도시	
	· 인접부지의 공지 위치를 고려, 공지 활용도를 위해 집중되도록 배치	○		도시	
	· 콘크리트 옹벽이 불가피할 경우, 넝쿨식물 등을 활용한 입면녹화나 전면식재대 조성을 통해 차폐	○		농어촌	
	건축물	지붕 및 옥상	· 주변 경관에 순응하는 형태의 지붕 설계(경사지붕 권장)	○	공통
· 경관의 연속성을 위해 인접 건축물의 지붕형태와 유사성 유지			○	공통	
· 지붕의 지나친 장식 또는 형태의 차용 지양			○	공통	
· 평지붕의 경우 옥상 녹화나 정원 설계			○	도시	
· 경사지붕의 경우 지붕경사도는 4/10~8/10이 유지되도록 함			○	도시	
입면		· 경사지붕의 경우 처마길이는 30cm이상 유지	○	도시	
		· 지붕 및 옥상층에 설치되는 설비 및 부대시설 등은 가림막으로 차폐	○	도시	
		· 수평선을 강조하고, 절제된 매스 형태로 계획	○	농어촌	
		· 높이는 10m를 넘지않는 지상2층 이하를 권장	○	농어촌	
		· 지붕은 도로방향으로 경사형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	○	농어촌	
		· 물탱크는 지붕구조물 내에 차폐·설치한다. 이때 지붕의 형태 및 색상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차폐시설의 계획을 권장	○	농어촌	
		·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입면 형성		○	공통
		· 단조로운 평면적인 입면 지양(적절한 분절로 입체감 형성)	○	도시	
		· 건축물의 측·후면이 동일 또는 조화를 이루는 재료 사용	○	공통	
		· 특정한 목적없이 단순한 모방 및 과도한 장식적 요소의 적용 지양	○	공통	
외부공간	· 목재, 석재 등 자연재료 및 소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재료 사용		○	공통	
	· 주 외장재, 부외장재, 포인트외장재의 3종류 내외로 사용	○		공통	
	· 건축물 외벽의 녹화	○		공통	
	· 가능한 설비 및 외부부착물이 전면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		공통	
	· 전선은 한 곳에 모아서 일정규격의 덮개를 설치하여 정리	○		공통	
	· 담장은 가급적 설치 지양, 설치시 1.2m이하의 투시형 및 자연소재	○		공통	
외부공간	· 도로변 단독주택의 경우 생울타리나 담장을 설치하여 내부공간의 요소를 차폐 (단, 담장은 자연소재 사용 또는 녹화)	○		농어촌	
	· 주택부지내 외부주차장은 환경을 살린 투수성 포장	○		공통	
	· 주차장은 외부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함	○		공통	
	· 대문 및 담장의 위치와 형태가 이웃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		공통	
	· 건축선에 의해 확보된 전면공간은 녹지 조성	○		공통	

주) 비고란의 공통 : 도시, 농어촌 공통 적용, 도시 : 도시지역 적용, 농어촌 : 농어촌지역 적용



## 특별관리구역 설계지침

### 적용대상

-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내의 단독주택
  - 경관중점관리구역 : 당진동 구시가지, 당진천 주변, 석문국가산업단지, 삼교호 관광지, 면천읍성 주변, 당진시청사 가로변
  - 지구단위계획구역
- 도시개발구역 : 당진1지구, 대덕수청지구, 송악지구, 우강송산지구
- 관광형 : 난지도, 왜목, 도비도, 초락도, 안섬포구
- 주거형 : 덕마리지구(신성대학 주변), 한진리지구
- 산업단지 : 석문국가산업, 아산국가산업(고대, 부곡), 황해경제자유구역(송악지구), 송산일반산업단지, 합덕 지방산업, 합덕 순성테크노폴리스단지, 합덕 인더스파크 일반산업
- 경관협정구역 : 향후 추가 지정

### 설계지침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비고
이미지	• 첨단산업단지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설계 고려	○		산업단지
	•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물 설계 고려	○		공통
	• 관광지 및 대학촌으로서 특색있는 건축 설계	○		덕마리지구, 삼교호관광지, 난지도, 왜목, 도비도, 초락도, 안섬포구
배치	• 지형에 순응하는 건축물형태 및 배치(필요시 경관시물레이션 시행)		○	공통
	• 구릉지형에 맞는 테라스형, 타운하우스형 개발 유도	○		공통
	• 수변에서의 개방감을 고려한 건축물 형태 및 배치(필요시 경관시물레이션 시행)		○	당진천주변, 석문국가산업, 삼교호 관광지, 난지도, 왜목, 도비도, 초락도, 안섬포구, 한진리지구
높이	• 보전형 조망점에서 배후 산지를 고려한 건축물 스카이라인 형성		○	공통
지붕	• 단독주택단지로 개발되는 경우 아름다운 지붕 설계	○		공통
	• 경관의 연속성을 위해 인접 건축물의 지붕형태와 유사성 유지		○	공통
입면	•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입면 형성		○	공통
	• 단일건축물의 입면적은 위압감 방지를 위해 3,000㎡이하로 조성		○	공통
	• 목재, 석재 등 자연재료 및 소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재료 사용	○		공통

주) 비고란의 공통은 특별관리구역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

## 공동주택 경관설계지침

### 기본방향

#### 원경

- 배경이 되는 자연경관과의 조화
- 블록내 주동의 높이조절로 다층적 경관 연출
- 지붕형태 및 색채의 통일로 정연화된 이미지 연출

#### 중경

- 탑상형 주동형식을 배치하여 개방적인 경관 연출
- 주요 조망대상으로의 통경을 고려한 단지 배치
- 저층·중층·고층으로 나누어 입면 디자인

#### 근경

- 보행자를 고려한 저층부의 공공공간 확보
- 저층부의 색채·재료 특화
- 단지 경계부의 담장 녹화로 친환경적 이미지 연출

### 경관설계원칙

#### 자연을 시각적 배경으로 하는 스카이라인 형성

- 주동의 조화로운 높이 조절로 중첩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 주동 사이를 넓혀 통경축을 확보함으로써 시각적 개방감 조성

#### 친환경적 주거공간 조성

- 생태적으로 안정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방음벽, 옹벽 등의 녹화를 유도
- 주변의 녹지나 공원, 가로와의 연계 도모

#### 통일성과 다양성이 조화를 이루는 단지계획

- 일률적인 판상형 지양, 다양한 주거동을 조화롭게 배치
- 단지 내에서는 사용 재료와 색채에 대해서 통일성 부여

#### 도시공간과 일체화되는 주거지역 조성

- 외부공간과 인접 가로공간과 연계하여 단지계획
- 폐쇄적 담장 설치 지양, 식재를 하거나 개방형으로 조성

### 적용 범위 및 대상

- 적용범위 : 신규로 건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
- 적용대상 : 주거지역 내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호 공동주택과 상업지역내 주거면적이 30% 이상인 주상복합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



일반관리구역 설계지침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부지조성	· 가능한 자연형 사면구성, 옹벽 및 절·성토 발생의 최대한 억제		○	
	· 절토시 단면형상은 다단으로 나누어 처리하고 식재 피복		○	
	· 대지내 옹벽은 위압감 저감을 위해 조경석 쌓기 등 친환경적 설계		○	
	· 옹벽에는 담쟁이나 지피식물 등을 이용하여 경사면 녹화		○	
배치 (통경축)	· 하천, 산지 등 주요 경관자원으로 조망 확보	○		
	· 집적을 통해 시각 회랑 확보		○	
	· 블록별 폭 30m 이상의 통경축을 확보		○	
	· 조망자원 인접부는 입면적 최소화한 주거동 배치 (관상형 주거동의 평형 배치 지양)	○		
	· 경사지의 경우 경사를 활용한 건축물 배치(테라스형 등)	○		
	· □, ㄷ, H 자형 배치 지양	○		
	· 주변 환경과 무관하게 동일 주거동의 반복적인 배치 지양	○		
	· 보행녹도 및 바람길 확보		○	
	· 건축한계선 등을 이용한 가로의 개방감 확보(부지경계선에서 6m 이상)		○	
	· 외부공간은 도로 및 공원 등 주변의 공공공간과 연계하여 배치	○		
스카이라인	· 층고의 변화로 리듬감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		
	· 세부적인 높이의 변화보다는 거시적인 단지 전체의 스카이라인 고려	○		
	· 주변과 조화된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한 건축물 높이(층수) 산정	○		
	· 하나의 단지가 7개동 이상일 경우 동일 층수가 30% 이내	○		
	· 중경 이상의 조망점을 기준으로 높이설정을 위한 경관시뮬레이션	○		
형태	주동 형태	· 타워형, 복합형, 유선형 등 입지에 따라 다양한 형태 도입	○	
		· 탑상형 등 지형보존 및 시각통로에 유리한 주거동 적극적 활용	○	
		· 지표동 설정 및 시각적 디자인을 통한 초점 부여	○	
		· 주동길이 60m이내 계획		○
	옥탑 지붕	· 단지별 또는 가로별 특색있는 지붕 설계로 통일감 조성	○	
		· 입면부와 조화를 이루는 지붕형태로 계획	○	
		· 최상층 복층형, 개방형천장 등 옥탑부 높이를 시각적으로 완화	○	
		· 특정한 목적없이 과도한 장식적 요소의 적용 지양		○
		· 평지붕인 경우 가급적 옥상녹화	○	
		· 옥탑의 물탱크 설치 지양(소방법상 필요한 경우 제외), 필요시 차폐	○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형태	입면	· 주거동에 의한 위압감 방지 위해 입면적 제한(1동 3,500㎡이하)	○		
		· 개방감 확보를 위해 단지의 입면차폐도는 40m이하	○		
		· 필로티 등의 도입을 통해 입면 분절, 돌출을 통한 입체적 계획	○		
		· 1층필로티 설치시 유효높이 4.5m이상, 유효폭 10m이상 개방감 확보	○		
		· 고층 주거동의 경우 저층, 중층, 고층 부위의 차별적 입면 구성	○		
		· 저층부는 석재, 벽돌, 목재 등 자연재료를 사용	○		
		· 담쟁이 등을 이용한 노출된 콘크리트 측벽의 벽면녹화	○		
		· 주동의 출입구는 인지성과 입면의 다양성을 위해 디자인 특화	○		
조명	· 조명은 탐상형 주동을 위주로 설치	○			
	· 주거지역에 광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	○			
외부공간	진입부	경계	· 과도한 연출을 금지하고 주변 시설물과 조화 고려	○	
			· 단지의 주출입구에 야간 보행자를 위한 조명 설치	○	
			· 진입부에 소규모 광장을 조성하여 장소성 제고	○	
			· 보행자 및 노약자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조성	○	
	경계부	경계부	· 담장은 가급적 설치 지양(설치시 투시형 및 자연소재)	○	
			· 녹지, 보행로 등 공공공간에 접하는 경우 개방하여 연계	○	
			· 방음벽 설치가 필요한 경우 가급적 마운드로 대체	○	
			· 건축선 전면공지에 조깅 및 운동시설 설치 등 웰빙코스 조성	○	
	오픈스페이스	조경	· 놀이터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놀이시설 설치 및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	○	
			· 광장에 벽천, 분수 등 수(水)요소를 활용한 변화감 있는 경관연출	○	
	주차장	주차장	· 하천에 면한 경우 하천으로의 접근 보행로 확보	○	
			· 보행로에는 화목류 또는 수형과 그늘이 좋은 교목 식재	○	
	주거공간	주거공간	· 단지 내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30%이상	○	
			· 지하화를 유도하고, 지상주차는 최소화하여 녹지공간 확보	○	
주거공간	주거공간	· 주차장은 근린블럭 또는 프로그램 주차장으로 계획	○		

주) 도시, 농어촌 공통 적용



주동의 높이변화로 스카이라인 형성      탐상형 배치로 시각적 개방감 확보      지형에 순응한 테라스형 공동주택



1층 필로티 설치로 개방감 확보      커뮤니티 광장 및 녹지공간 조성      단지내 산책로 및 수경요소 도입



## 특별관리구역 설계지침

### 적용대상

-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내의 공동주택
  - 경관중점관리구역 : 당진동 구시가지, 당진천 주변, 석문국가산업단지, 삼교호 관광지, 면천읍성 주변, 당진시청사 가로변
  - 지구단위계획구역
- 도시개발구역 : 당진1지구, 대덕수청지구, 송악지구, 우강송산지구
- 관광형 : 난지도, 왜목, 도비도, 초락도, 안섬포구
- 주거형 : 덕마리지구(신성대학 주변), 한진리지구
- 산업단지 : 석문국가산단, 아산국가산단(고대, 부곡), 황해경제자유구역(송악지구), 송산일반산단, 합덕 지방산단, 합덕 순성테크노폴리스단지, 합덕 인더스파크 일반산단

### 설계지침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비고
이미지	• 첨단산업단지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설계 고려	○		산업단지
	•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적인 건축물 설계 고려	○		공통
	• 관광지 및 대학촌으로서 특색있는 건축 설계	○		덕마리지구, 삼교호관광지, 난지도, 왜목, 도비도, 초락도, 안섬포구
배치	• 공동주택개발시 주동길이는 50m 이하	○		공통
	• 구릉지형에 맞는 테라스형, 타운하우스형 개발 유도	○		공통
	• 수변에서의 개방감을 고려한 건축물 형태 및 배치(필요시 경관시물레이션 시행)		○	당진천주변, 석문국가산단, 삼교호 관광지, 난지도, 왜목, 도비도, 초락도, 안섬포구, 한진리지구
	• 단지구획에 접하는 보행자도로에서 수변으로의 조망이나 접근을 위한 통경 확보시 필로티 설치	○		
높이	• 보전형 조망점에서 배후 산지를 고려한 건축물 스카이라인 형성		○	공통
지붕	• 경관의 연속성을 위해 인접 건축물의 지붕형태와 유사성 유지		○	공통
입면	• 주변 건축물과 조화로운 입면 형성		○	공통
	• 목재, 석재 등 자연재료 및 소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재료 사용	○		공통
	•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입면 차폐도는 30m이하		○	공통
외부공간	• 조성외부공간을 배후 구릉지나 산지로의 연결 및 접근성 확보	○		공통
	• 지하주차장을 원칙으로 하고, 지상주차장시 다층 식재로 주도로 차폐	○		공통
	• 정비사업 또는 1,000㎡이상의 건축물 신축시 보행로와 연계된 선근, 벤치등을 조성	○		공통
	• 주요 교차로 인접필지의 신축재건축시 주진입부의 아케이드, 쌈지공원 조성	○		공통
야간경관	• 상징적 야경 연출을 위한 조명 연출	○		공통

주) 비고란의 공통은 특별관리구역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

## 상업·업무건축물 경관설계지침

### 기본방향

#### 원경

- 주요지점 건축물은 당진시 상징화 디자인
- 당진시 경관 컨셉을 반영한 입면 및 상층부 디자인

#### 중경

- 도로에서 조망시 상업지역 특색을 알릴 수 있는 조형적 요소 가미
- 확실적인 상업시설 이미지 탈피한 의장요소 가미

#### 근경

- 건축선의 충분한 이격을 통한 공공성 강조
- 건축물 전면부에 광장조성 후 당진시 특화디자인 도입

### 경관설계원칙

####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정돈된 가로경관 형성

- 가로의 연속성과 통일성 있는 계획으로 주변과의 조화 유도
- 옥외광고물의 디자인 및 색채에 있어서 건축물과의 조화 고려

#### 상업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쾌적한 가로 형성

- 동일한 높이의 저층부를 형성함으로써 가로에서의 연속성 확보
- 건축선을 일치시켜 도로의 연속성 확보
- 개성있고 산뜻한 디자인의 건축물 유도

### 범위 및 대상

- 적용범위 : 신규 건축 또는 리모델링되는 상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
- 적용대상 : 상업지역 내 건축법시행령[별표1]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과 기타지역의 근린생활시설, 제14호 나.일반업무시설에 대하여 적용



주변건축물간의 조화로운 가로 형성



개성있고 산뜻한 건축물 디자인



설계지침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배치	· 경관의 연속성을 위한 가구별 건축선 일치(동일블럭내 건축선 지정)		○
	· 건축물 외벽의 연속적 배치로 지역 전체의 통일된 이미지 유도		○
	· 가로변 대형건물은 전면에 충분한 공개공지 확보		○
스카이라인	· 도로변의 건축물은 주변 건축물과 스카이라인 고려	○	
형태	지붕 및 옥상	· 가로의 연속성을 위해 인접건축물의 지붕층 형태와 유사성 유지	○
		· 평지붕에는 옥상녹화 및 조경 권장, 도로에서의 지붕디자인은 특화	○
	입면	· 가로별 주변 건축물과 볼륨 및 입면 등이 조화되도록 계획(일관성)	○
		· 건축물의 단조로운 입면 지양(적절한 분절로 입체감 형성)	○
		· 저층부 아케이드 설치시 건축물 입면과 조화 고려	○
		· 건축물의 측·후면이 동일 또는 조화를 이루는 재료 및 색채 사용	○
		· 주 외장재, 부외장재, 포인트외장재의 3종류 이내로 사용(최소화)	○
		· 특정한 목적없이 단순한 모방 및 과도한 장식적 요소의 적용 지양	○
		· 교차로 및 도로에 면한 건축물은 전면으로 인식되도록 설계	○
		· 중심지 상업물의 경우 보행로의 시점부와 각각부 건축물 특화	○
		· 1층부에는 보행자를 위한 전시공간 및 전시벽 설치	○
		· 콘크리트 벽면이 전면 노출시 녹지요소 보강(노출콘크리트 제외)	○
		· 가능한 설비 및 외부부착물이 전면도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
		외부공간	· 확보된 공개공지에 소규모 공장 및 공원 등 휴게공간 조성
· 포장은 공공영역의 포장재료 및 패턴과 연계	○		

주) 도시, 농어촌 공통 적용

## 공업건축물 경관설계지침

### 기본방향

#### 원경

-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경관디자인
- 원경에서의 통일성 및 조화성을 강조한 디자인

#### 중경

- 경계부의 친환경적인 처리
- 공장 설비 및 적재내용에 대한 차폐 실시
- 위압감이 느껴지는 공장시설에 대한 방지

#### 근경

- 진입부의 쾌적성 확보
- 지역이미지를 살린 공업시설의 진입부 형성
- 조망성을 고려한 벽면 연출

### 경관설계원칙

#### 주변 건축물과 공업시설 경관의 조화 유도

- 건축물 및 구조물이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하도록 유도

#### 밝고 경쾌한 이미지 형성으로 도시의 활력 부여

- 녹지 조성 및 식재 등으로 인공적인 이미지 저감 유도
- 대규모 건축물이 위압적인 경관 형성 지양

### 적용 범위 및 대상

- 적용범위 : 신규 건축 또는 리모델링되는 공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
- 적용대상 : 공업지역 내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7호 공장 및 제18호 창고와 기타지역의 공장용도 건축물 및 부속시설에 대하여 적용



일반관리구역 설계지침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부지조성	· 가능한 자연형 사면구성, 옹벽 및 절·성토 발생의 최대한 억제		○	
	· 절토시 단면형상은 다단으로 나누어 처리하고 식재 피복		○	
	· 대지내 옹벽은 위압감 저감을 위해 조경석 쌓기 등 친환경적 설계		○	
	· 옹벽에는 담쟁이나 지피식물 등을 이용하여 경사면 녹화	○		
배치	· 도로변 건축물은 주변 건축물의 전면위치 고려	○		
	· 설비시설, 기계실 등 부속실은 가급적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배치		○	
	· 부지경계선에서 6m 건축한계선을 지정	○		
	· 부지경계선에서 1m 이상의 담장한계선을 지정	○		
지붕 및 옥상	· 평지붕인 경우 지붕에 옥상녹화	○		
	· 경사지붕인 경우 주변 건축물간의 지붕경사를 동일하게 디자인	○		
	· 태양열 등 친환경에너지 활용 유도	○		
형태	· 대규모 박스형 건축을 지양하고 주변과 조화 유지	○		
	· 획일적이거나 단조로운 입면 지양(적절한 분절로 입체감 형성)	○		
	· 건축물의 길이가 25m이상인 경우에는 분절	○		
	· 공장 내부시설 및 설비시설 미관향상을 위한 디자인	○		
	입면	· 외부에서의 미관을 고려하여 진출입부 디자인 처리	○	
		· 외장재는 친환경적인 재질 및 색채를 도입	○	
		· 건축물의 입면부와 측면부에 벽면녹화	○	
		· 외부공간에 적재물 등으로 인한 미관훼손 우려가 있는 부분은 차폐		○
		· 홍보형의 과도한 장식 지양		○
	외부공간	· 진입부는 산업단지의 특성을 반영하되 절제된 형태의 시설물 설치	○	
· 경계부는 완충 식재공간을 조성			○	
· 인공담장 지양, 자연소재를 활용하여 친환경적 담장 조성		○		
· 물탱크, 환기설비 등 미관저해 시설물은 가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폐		○		

주) 도시, 농어촌 공통 적용

### 특별관리구역 설계지침

#### 적용대상

-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내의 공동주택
  - 경관중점관리구역 : 석문국가산업단지
  - 산업단지 : 석문국가산단, 아산국가산단(고대, 부곡), 황해경제자유구역(송악지구), 송산일반산단, 합덕 지방산단, 합덕 순성테크노폴리스단지, 합덕 인더스파크 일반산단

#### 설계지침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비고
이미지	• 첨단산업단지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설계 고려	○		공통
배치	• 건축물의 이격배치를 통하여 개방감 확보(10m 이상)		○	공통
	• 부지경계선에서 6m 건축한계선을 지정	○		공통
	• 부지경계선에서 1m 이상의 담장한계선을 지정	○		공통
	• 수변에서의 개방감을 고려한 건축물 형태 및 배치 (필요시 경관시뮬레이션 시행)		○	석문국가산단, 아산국가산단
높이	• 보전형 조망점에서 배후 산지를 고려한 건축물 스카이라인 형성		○	황해경제자유구역, 송산일반산단, 합덕지방산단, 합덕 순성테크노폴리스단지, 합덕 인더스파크 일반산단
입면	• 대규모 박스형 건축을 지양하고 주변과 조화 유지	○		공통
	• 획일적이거나 단조로운 입면 지양(적절한 분절로 입체감 형성, 25m 이상의 경우)		○	공통
	• 고층 공장건축물의 경우 고층·중층·저층의 구분된 입면디자인 유도		○	공통
	• 외부공간에 적재물 등으로 인한 미관훼손 우려가 있는 부분은 차폐		○	공통
	• 홍보형의 과도한 장식 지양		○	공통
외부공간	• 진입부는 산업단지의 특성을 반영하되 절제된 형태의 시설물 설치	○		공통
	• 경계부는 완충 식재공간을 조성		○	공통
	• 인공담장 지양, 자연소재를 활용하여 친환경적 담장 조성	○		공통
	• 물탱크, 환기설비 등 미관저해 시설물은 가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폐		○	공통
야간경관	• 진출입부, 단지 주요도로에 접한 건축물은 벽면에 조명 설치	○		공통

주) 비교란의 공통은 특별관리구역 중 경관중점관리구역과 산업단지에 공통으로 적용

## 공공건축물 경관설계지침

### 기본방향

#### 원경

-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로운 친환경적 연출
- 옥상녹화 및 입면녹화를 통한 자연미 강조

#### 중경

- 지역이미지를 살린 건축물의 의장요소 도입
- 중상층부의 특화이미지 도입

#### 근경

- 보행자를 고려한 저층부의 공공공간 확보
- 옥외공간을 활용하여 공공 휴식공간 조성
- 경계부의 답장을 제거최소화하여 개방적 공간 연출

### 경관설계원칙

#### 도시오픈스페이스로서 개방성과 접근성을 고려한 디자인

- 시민의 공공적 사용과 커뮤니티 활동에 열려 있는 공간 조성
- 다양한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가 없는 모두 배려

#### 공공시설물로서의 심미성과 상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디자인

- 공적 건축물로서의 상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건축물로 디자인

#### 저탄소, 친환경의 선도적인 공공건축물

- 저탄소, 친환경, 고효율적인 설계로 미래지향적인 선도적 공공건축물로 조성

####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공공건축물

- 권위적이고 독립적인 형태의 건축물에서 벗어나 친근한 이미지 추구

### 적용 범위 및 대상

- 적용범위 : 신규 건축 또는 재건축(리모델링)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적용
- 적용대상 :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부대시설로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4호 가.공공업무시설, 제5호 문화집회시설, 제6호종교시설, 제10호 교육연구시설 등 공공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



건물의 매스 분절 및 시설복합화      담장 미설치로 개방감 확보      매스분절로 위압감 저감



전면공지에 커뮤니티 공원 조성      외부공간 녹지조성 및 옥상녹화      주변 건축물과 재료 및 색채 조화

### 설계지침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비고
부지조성	· 가능한 자연형 사면구성, 옹벽 및 절·성토 발생의 최대한 억제		○	공통
	· 절토시 단면형상은 단단으로 나누어 처리하고 식재 피복		○	공통
	· 대지내 옹벽은 위압감 저감을 위해 조경석 쌓기 등 친환경적 설계		○	공통
	· 옹벽에는 담쟁이나 지피식물 등을 이용하여 경사면 녹화		○	공통
배치	· 부지경계선에서 건축선은 10m이상 이격	○		공통
	· 도로변 건축물은 주변 건축물의 전면위치 고려하여 주 출입구 설치	○		공통
높이 및 스카이라인	· 설비시설, 기계실 등 부속실은 가급적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배치		○	공통
	· 저층부는 가로 스케일을 반영하여 높이 설정		○	공통
	·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하는 높이 계획		○	공통
	· 수평성을 강조하고, 절제된 매스 형태로 계획한다		○	농어촌
	·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공공건축물의 형태, 외관, 스카이라인을 계획		○	농어촌
지붕 및 옥상	· 지붕은 공공건축물로서 인지성이 높은 조형적 형태		○	공통
	· 평지붕인 경우 지붕에 옥상녹화		○	공통
	· 태양열 등 친환경에너지 활용 유도		○	공통
형태 입면	· 지나치게 권위적인 느낌의 건축물 디자인 지양		○	공통
	· 지역의 상징 건물로서 인지성 높은 디자인 권장	○		공통
	· 대규모 박스형 건축을 지양하고 주변과 조화 유지		○	공통
	· 획일적이거나 단조로운 입면 지양(적절한 분절로 입체감 형성)	○		공통
	· 불필요한 높은 계단, 거대한 캐노피 설치 지양		○	공통
	· 편안한 느낌을 주는 친환경적 외장재 사용		○	공통
	· 건축물의 입면부와 측면부에 벽면녹화		○	공통
	· 당해 기관을 지나치게 홍보하는 과도한 장식 지양		○	공통
· 홍보게시판, 전광광고물 등은 건축물입면과 통합 설계		○	공통	
	· 주변 건물과 조화되는 재료와 색채를 사용하되, 재료 자체의 색을 왜곡하거나 변형하는 색채 계획은 지양		○	농어촌
조명	·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한 조명시설 설치		○	공통
외부공간	· 진입부는 상징물, 안내시설 등으로 알기 쉽고 친근하게 설계		○	공통
	· 주출입구 현관부는 장애자용 램프 및 캐노피 설치		○	공통
	· 외부공간은 주변 오픈스페이스(하천,공원 등)와 보행로 연계		○	공통
	· 대상지 내 정원을 조성하여 녹지공간을 확보		○	공통
	· 옥외 주차장은 잔디블럭 등의 투수성 포장		○	공통
	· 담장설치 지양. 부득이한 경우 자연소재 활용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		○	공통
	· 물탱크, 환기설비 등 미관저해 시설물은 가로에서 보이지 않도록 차폐		○	공통

주) 비고란의 공통 : 도시, 농어촌 공통 적용, 도시 : 도시지역 적용, 농어촌 : 농어촌지역 적용

### 3. 오픈스페이스 경관설계지침

#### 기본원칙

##### 도시내 풍성한 녹지 확보

- 도심 내 부족한 녹지를 대량으로 확보하여 단절된 녹지를 연결하고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

##### 오픈스페이스 확보로 산지 조망보전

- 통경축 발생구간에 오픈 스페이스를 조성하여 산지를 조망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공간 확보

##### 권역별로 개성있는 공간 연출

- 권역별로 테마를 적용시키고 지역특색에 맞게 아이টে를 도입시켜 다양하고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

##### 주민을 위한 휴식, 여가공간 확보

-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나 휴게 및 운동을 즐길수 있는 여가공간을 확보

##### 도시의 녹지축과 하천축 연계성 확보

- 도시의 녹지와 수공간을 연계시켜 도심과 자연의 공생 도모

#### 사용방법

##### 목적

- 개방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자연자원의 생태적인 개념을 적극 활용해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오픈 스페이스를 조성
- 각종 개발로부터 녹지 및 하천 등의 훼손을 방지하고 녹지 및 하천 등의 보전을 위하여 녹지축 과 하천 축을 설정보존

##### 사용대상

- 공원, 하천 등의 계획가, 디자이너 등 오픈스페이스 설계, 시공, 심의, 허가를 담당하는 모든 오픈스페이스 관련자

##### 사용시기

사업승인신청, 심의, 허가, 신고시 사전 검토

##### 적용방법

효율적인 오픈스페이스 조성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적용하도록 하며, 그 외 지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

## 공원녹지 경관설계지침

### 경관설계원칙

#### 공공공간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거점 역할

- 공공공간과 유기적 연계되는 동선계획
- 다양한 문화 활동의 장으로 조성

#### 지형 및 색생 문화 역사적 요소 존중

- 시설물 위주가 아닌 계절감이 풍부한 식재계획
- 친환경재료 시설물 위주, 주제에 맞는 시설물 통합 설치
- 담장 및 펜스를 지양하여 개방성 높임

#### 기존의 녹지체계 및 수체계와의 연속성 중시

- 녹지체계 및 수체계와의 유기적 연계 고려
- 기존 식생을 최대한 살리고 랜드마크 기능을 하는 노거수 등은 보존
- 완충녹지 : 생태적 안정성과 식재대의 활용성 고려
- 연결녹지 : 녹지의 연결을 고려, 가로별 테마도입
- 경관녹지 : 쾌적성과 안전성 확보



화분식재로 풍성한 녹지공간 조성



도로 양옆을 연결하는 연결녹지 설치



시가지내 녹지축 형성



광장에 가로수 식재



외부공간 녹지조성 및 옥상녹화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가로수길



설계지침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공원	기본 원칙	· 어린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성 고려		○
		· 장소의 특성을 살린 경관 연출		○
		· 시선의 차폐로 우범화되지 않도록 조성		○
		· 자연지형의 적극적으로 활용(경관의 깊이 공간감 유도)		○
	배치	· 주변 공원, 학교 등 녹지거점간의 연계를 고려한 배치	○	
		· 노거수 등 지역 명소(명물)와 연계 조성	○	
		· 공원 조성 시 인접 보행가로 및 주요건축물과 동선 연계	○	
		· 통행객을 배려한 주동선의 설계		○
	식재	· 보행동선과 연계하여 휴게, 편의, 안내시설 배치	○	
		· 수목 등을 활용한 자연형 캐노피 형성 (그늘, 공간감 부여)	○	
		· 대형목 또는 군식을 통한 시각적 초점 부여	○	
		· 화목류, 초화류 등 식재로 계절별 다양한 색채변화감 연출	○	
	시설물	· 공원내부 조망이 필요한 곳에는 관목 및 중교목 위주 식재	○	
		· 특색있는 수목의 집합식재 등을 통한 공간구분 및 흥미유발 공간계획	○	
		· 공원내 시설물은 통일감 있는 재료와 형태로 설계	○	
		· 공원내 충분한 휴게공간 조성(그늘막과 벤치는 함께 설치 권장)	○	
		· 진입부와 공원 내 주요 결절점에 공원시설 안내도 설치	○	
		· 어린이가 안전하면서 정서 함양과 감성을 자극하는 놀이시설 설치	○	
		·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용 도모 위한 공원내 운동시설 설치	○	
		· 동적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바닥분수 등 수경요소 도입	○	
·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징조형물 설치			○	
· 야간 활용도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친환경 조명 설치			○	
포장	· 공원시설물은 원색계열 및 자극적 색채의 남용 금지		○	
	· 주변과 조화되는 경관을 유도하는 패턴 및 재료 사용	○		
	· 과장된 패턴이나 상징성을 강조하는 패턴의 남용 주의	○		
	· 친환경 투수성 포장재와 자연 재료 사용	○		
경계부	· 공원 내 주차장은 주차장 면적의 20%이상 녹화	○		
	· 보행 가로와의 경계부에는 녹지와 휴게시설의 설치	○		
녹지	· 담장설치 지양. 부득이한 경우 생활타리 등 개방적으로 조성		○	
	공동 사항	· 식생의 폭을 확보하여 훼손구간을 완화	○	
		· 식생구조는 다층구조로 안정된 식생층 형성	○	
		· 다양한 생태환경을 위한 풍부한 수종 식재	○	
		· 자생수종을 고려하여 보완적 성격의 식재를 실시	○	
		· 지역이미지 강화를 위한 지역수종 고려		○
	원충 녹지	· 가로수와 연계하여 자연스러운 녹지경관 흐름 유도		○
		· IC 주변에 차량충돌을 저감시키기 위해 원충식재 조성	○	
		· 공업지역 및 대로변은 내연성이 강한 수목을 활용한 다층차폐 식재		○
	연결 녹지	·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연결부분은 최소 10m이상 폭원의 마운딩 처리된 녹지 설치 <sup>1)</sup>		○
		·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의 연결부분은 최소 15m이상 폭원의 녹지 설치	○	
		· 도시의 녹지를 연결하여 도심과 자연의 공생을 도모		○
경관 녹지	· 하천변 연결녹지는 수변과 연계된 수종 선정		○	
	· 시가지내 가로수를 활용하여 순환형 연결녹지 조성		○	
	· 가로에는 일관적인 이미지 연출을 위한 동일수종을 식재		○	
	· 다양한 수목 군식을 통한 녹지 특화	○		
경관 녹지	· 차량 운전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녹지 조성		○	
	· 상업지역 가로변은 밀식으로 인한 차폐 지양(상업지역 경관 고려)	○		

주) 도시, 농어촌 공통 적용

## 수변 경관설계지침

### 경관설계원칙

#### 도시의 쾌적한 친수공간 조성

- 보행가로부터 수변공간으로의 접근성 높임
- 주변환경과 조화되도록 통합적으로 시설물 설치

#### 보존구역과 이용구역 분리로 환경보존과 친수성 높임

- 빈번히 침수되는 구역의 시설물 설치 최소화
- 동식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행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은은한 조명 설치

#### 건축물의 형태 및 배치시 주변과 조화 고려

- 수변 건축물은 경사형 지붕을 권장하여 주변 스카이라인과의 조화 유도
- 건축물의 답답한 평형배치를 지양하고 사선배치 등 하천으로의 개방감 확보



수변경관과 어울어진 건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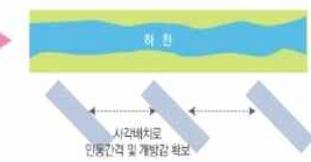
수생식물 식재



수변 조망데크 설치



적극적인 하천과의 동선 연결로 접근성 확대



건축물의 사선배치로 개방감 확보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 녹지 설치 및 규모),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제1장 제9절(용도지역간 완충공간 설정)참조

- 경관녹지의 경우, 최소 폭원 10m 규정에 대하여 예외로 하며, 지역특성 및 입지 여건을 고려하여 녹지 또는 공공공지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녹지의 설치 또는 대체 시설 설치 여부를 결정



설계지침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공통 사항	• 교통약자,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리성 도모		○
	• 접근로, 편의시설 등 인공시설 설치 시 자연소재 활용		○
	• 주요동선 결절부에 조망테크 등 수변조망 공간 조성	○	
	• 인공시설이 필요한 경우, 환경성 고려하여 가급적 설치 최소화	○	
	• 하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한 건축물 배치(평형배치 지양)	○	
	• 주변 스카이라인과 조화되는 경사형 지붕 설치	○	
	• 식생이 부족하거나 없는 구간에 자생수종을 보완하여 생태경관 연출	○	
	• 접근로는 적절한 조도 유지 및 통합 안내체계 제공		○
	• 가급적 조명 설치 지양, 부득이한 경우 수변생태를 고려하여 설치	○	
• 조망이 양호한 지점에 테크 설치	○		
해안	• 해안경관조망이 양호한 곳에 조망테크 설치		○
	• 수변 활동공간과 주변 문화 및 상업거점 시설과의 보행동선 연계	○	
	• 상업건축물의 옥외광고물 정비		○
하천	• 하천의 형태는 원형을 그대로 최대한 유지		○
	• 자연 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며, 훼손된 공간 복원		○
	• 제방은 콘크리트 벽면 등 인공제방 지양. 생태형 호안처리		○
	• 인공제방의 경우 수목 등 식재를 통해 인공경관 저감	○	
	• 하천 이용자가 많은 구간에 징검다리 설치로 접근성 증대	○	
	• 교량 하부공간을 활용하여 휴식 및 문화공간 조성	○	
	• 하천변 위해경관 차폐 및 부분적 개방으로 변화감 부여	○	
• 상습침수구간에는 친수생태공간으로 조성하고 시설설치 최소화	○		

주) 도시, 농어촌 공통 적용

## 도로 경관설계지침

### 경관설계원칙

#### 보행자도로 : 보도폭을 최대한 확보하여 보행권 확보

- 시설물의 도로 점유율 최소화하여 최소 유효 보도폭 확보
- 시공을 철저히 하여 내구성과 평탄성을 높임
- 교통약자를 위하여 횡단보도 진입부 등의 턱 낮춤



시설물의 도로 점유 최소화



맨홀 등과 보도포장 일체화



휠체어 통과가능하도록 블라드 설치

#### 자전거도로 : 보행동선과 분리된 자전거도로 연속성 확보

- 기존 돌출시설물 제거가 어렵거나 보행을 위한 최소폭이 확보되지 않는 보행가로에는 원칙적으로 보도상에 자전거도로 설치 금지
-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설치시에는 노면표시를 확실히 하며 안전성 확보
- 노면의 요철을 최소화하고, 보행가로에 준하는 평탄도 유지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분리하여 설치



자전거도로 노면표시 명확화



자전거 경사로 설치로 동선 연계

#### 자동차도로 : 자동차와 보행자의 안전성 고려

- 자동차도로는 안전을 위해 최소 차로폭 이상을 확보
- 안전성과 대중교통 이용을 방해하는 가로시설물 설치 금지
- 공공시각매체와 시설물을 통합하여 시설물의 수를 줄임



안전운행을 위한 명확한 차선 확보



인식성이 양호한 과속방지턱 설치



건축물내 차량출입구 완충 바닥포장



### 설계지침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공통	• 노면의 요철을 최소화하고 도로의 평탄도 유지	○		
	• 군집 및 다층 식재를 통하여 가로경관의 다양화 유도	○		
	• 계절테마를 도입한 가로수 식재		○	
	• 교통관련 안내판 및 가로시설물은 가급적 통합적 설치	○		
도로	자동차 도로	• 교차로 가각부에 시선을 차단하는 시설물 설치 제한 <sup>2)</sup>		○
		• 중앙분리대를 활용한 녹지대 조성	○	
		• 교통섬 및 교차점 광장에는 가능한 녹지 조성	○	
	보행자 도로	• 보행구간은 걷기 편안하도록 평탄하게 조성	○	
		• 건축물 등에 대한 조망을 방해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가로수 식재	○	
		•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설치 기준에 따름 <sup>3)</sup>		○
		• 보행도로와 횡단보도의 단차 최소화	○	
		• 가로별 일관성 있는 보도 패턴과 색채 적용(원색계열 색상 최소화)	○	
	자전거 도로	• 버스, 택시 등 이용객의 승하차 및 접근 인지 방해시설물 설치 제한 <sup>4)</sup>		○
		• 대중교통 및 주요지점 등 다중이용자시설 주변에 자전거보관소 설치	○	
		• 자전거도로상에 안전을 위해 시설물 설치 지양	○	
		• 자전거 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수종 선택 및 식재	○	
	• 자전거도로 경계선 및 노면표지를 명확히 표시	○		

주) 도시, 농어촌 공통 적용

2) 도로의 유지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3)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횡단보도)

4) 도로교통법 제32조에 근거한 계획 기준

## 4. 옥외광고물 경관설계지침

### 기본원칙

#### 자연재료의 사용으로 친환경적인 광고물 디자인

- 친환경적인 환경조성을 위하여 자연재료의 사용을 권장하고, 형태 디자인을 계획하고 자연환경 색채를 고려한 광고물 색채계획 수립

#### 일관된 기준의 적용으로 통일된 도시이미지 구현

- 통합 이미지 구현을 위하여 일관된 광고물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광고물의 설치위치 및 크기의 제한으로 가로의 연속된 이미지를 구현

#### 광고물 크기의 최소화로 주변과의 조화 도모

- 주변 환경 및 건축물과의 조화를 위하여 광고물의 크기 최소화, 돌출색 및 고채도의 색을 지양, 휘도가 낮은 조명방식의 적용 계획 수립

#### 건축물 설계시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서 반영으로 일체화 구현

- 건축물과의 일체화를 위하여 건축물 설계시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하며, 건축물 허가 및 신고시 옥외광고물을 사전에 검토

#### 예술적 가치를 가지는 조형적 광고물의 품격화

- 예술성 가치를 가지는 조형적 디자인을 계획하고, 디자이너 등록제 및 실명제 도입으로 광고물에 대한 책임감 고취

#### 간판을 볼거리로 제공하여 관광상품화

- 간판을 관광상품화하고 광고물의 명소화를 위하여 특화이미지 반영한 테마 부여

### 사용방법

#### 목적

- 광고물을 하나의 예술품으로 인식되어 도시전체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광고물의 상품화를 통하여 걷고 싶은 거리, 가고싶은 거리로 조성

#### 적용범위

- 일반관리구역 및 특별관리구역내의 광고물을 부착한 상업업무 및 근린생활 용도의 건축물에 적용
- 특별관리구역은 경관계획중 지구단위계획구역, 옥외광고물 특정구역, 경관협정지역에 지정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이외 구역은 당진시 옥외광고물 조례로 규정



### 사용대상

- 광고물 허가권자,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광고물 제작자, 광고물 디자이너 등 광고물 제작, 설치, 심의, 허가를 담당하는 관련자

### 사용시기

-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사업승인신청, 심의, 허가, 신고시 광고물을 함께 사전에 검토하고, 건축물 설계시 광고물의 설치 위치 및 크기를 입면 디자인에 반영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옥외광고물 건축물 인·신고시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서를 제출

### 적용방법

- 지구단위구역은 옥외광고물 유형, 설치 위치, 재료, 색채 등의 제한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 광고물의 유형, 형태, 재료, 색채, 조명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사용

### 특약사항

- 충청남도의 옥외광고물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당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및 광고물 특정구역 고시 내용 등과 상충될 경우에는 특정구역 고시내용 및 광고물 조례를 따르도록 함

###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절차



##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서

구분	고려사항	비고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위치도(1/500 축척)</li> </ul>	1/500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기본요건 (위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도지역/지구, 전면도로 폭, 용도, 층수, 마감재료 등 건축개요)</li> </ul>	1/500
관련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구단위계획지침 준수 내용</li> <li>옥외광고물 조례 준수 내용</li> </ul>	
광고물 설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입면도에 간판 부착 위치 및 크기, 재질 표시</li> <li>정면, 배면, 좌/우측면에서 광고물 설치되는 도면 표기</li> <li>광고물 등의 원색 도안</li> </ul>	1/500
광고물 설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원칙에 관한 사항</li> <li>가로형 간판설치에 관한 사항</li> <li>돌출 간판 설치에 관한 사항</li> <li>지주이용 간판 설치에 관한 사항</li> <li>창문이용 광고물 설치에 관한 사항</li> <li>기타 광고물과 관련된 사항</li> <li>이상의 각 내용별 설치 위치, 수량, 크기, 색채, 재료, 조명 등을 포함</li> </ul>	
유형 상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로형 간판설치에 관한 상세도</li> <li>돌출간판 설치에 관한 상세도</li> <li>지주이용 간판 설치에 관한 상세도</li> <li>창문이용 광고물 설치에 관한 상세도</li> <li>기타 광고물과 관련된 사항의 상세도</li> <li>이상의 각 내용별 설치 위치, 수량, 크기, 색채, 재료, 조명 등을 포함함</li> </ul>	1/20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대차계약서에 삽입할 내용 기입</li> <li>관리부서 및 관리자 표기</li> </ul>	



## 경관설계원칙

### 통합적인 도시이미지 구성을 위한 광고물 계획

- 일관된 광고물 설치기준 계획으로 도시의 연속적이고 통일된 이미지 구현

###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광고물 디자인

- 광고물 크기의 최소화로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을 연출
- 주변 색채와 조화로운 풍토색을 도입하도록 함

### 건축물과 광고물을 일체화하여 계획

- 건축물 설계시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을 반영하여 건축물 입면 계획

### 업소의 잦은 변경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디자인

- 교체로 인한 건축물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탈부착이 용이하게 계획



저층부에만 가로형 간판 설치



입체형 가로형 간판



입체형 간판의 야간경관



규모 및 설치위치 통일한 돌출간판



한면에 일렬로 정비한 가로형 간판



업소간 통합하여 설치한 지주이용간판

## 일반관리구역 설계지침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공동 사항	수량	· 업소당 광고물의 총수량은 2개 이내(가각부 3개 이내)		○
	표시 방법	· 판류형 간판은 지양하고 입체형 간판 설치		○
		· 한 건물 안에서의 조화성을 고려 가급적 동일 또는 유사한 서체 사용		○
		· 가급적 단순, 명확한 내용 표기		○
		· 업소별 특성화한 로고, 엠블럼, 픽토그램 등 활용		○
		· 문자의 크기는 세로 0.7m이내로 설치		○
		· 문자는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함(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 병기)		○
	재료	· 동일 건축물내 광고물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재료 사용		○
		· 건물외장재를 고려하여 건물이미지와 조화되는 재료 사용		○
		· 유지관리가 양호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 사용		○
	조명	· 에너지 고효율 조명 사용 권장		○
		· 광고물의 휘도를 낮게 하여 눈부심을 최소화		○
		· 네온 및 점멸방식 조명 설치 지양		○
		· 광원의 직접 노출, 간접조명 방식 및 외부조명방식 권장		○
	색채	· 돌출색 및 원색의 사용을 지양, 입면색채와 조화		○
· 채도 4이상, 명도 6이하인 색의 바탕면 사용규제			○	
· 형광색 사용금지			○	
기타	· 옥상간판,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애드벌룬 사용 금지 (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것은 예외)		○	
가로형 간판	수량	· 가로형간판은 업소당 1개 이내(가각부 2개 이내)		○
		· 업소가 표시할 경우 설치 가능한 광고물의 총수량에 포함됨		○
	크기	가로 · 해당 건축물의 가로폭 이내(최대 10m 이내)		○
		세로 · 세로 0.7m 이내		○
	표시 방법	· 동일 건물, 동일 층에서는 간판의 설치높이 통일		○
· 3층 이하 설치 · 건물입면에서 간판의 돌출폭은 30cm이내			○	
건물상 단 가로형 간판	수량	· 4층 이상 건축물에 1개 설치 가능		○
		· 업소가 표시할 경우 설치 가능한 광고물의 총수량에 포함됨		○
	크기	· 건물 가로크기의 1/2이하		○
표시 방법	· 건축물 최상층의 정면에 입체형으로 건축물명 또는 대표업소명 표시		○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연립형 간판	수량	· 각 업소의 개성보다는 전체적인 조화가 우선이 되도록 디자인		○
		· 업소가 표시할 경우 설치 가능한 광고물의 총수량에 포함됨	○	
	크기	· 연립되는 가로형간판 1개의 면적최대 1㎡이내	○	
		· 게시 틀의 총면적은 최대 8㎡이내	○	
		· 간판의 두께는 벽면으로부터 20cm이내		○
	표시 방법	· 정면 5층 이하 별도공간에 가로형으로 연립하여 설치	○	
· 벽면공간이 충분히 확보된 곳이나 꼭각지점에 표시		○		
돌출형 간판	수량	· 돌출형 간판은 업소당 1개 이내		○
		· 업소가 표시할 경우 설치 가능한 광고물의 총수량에 포함됨		○
	크기	가로 · 광고물의 가로크기 0.8m이내		○
		세로 · 건축물의 1개층 높이 이내로 설치		○
	표시 방법	· 건물의 5층 이하에 설치		○
		· 건물의 좌우 모서리 중 한쪽에 일렬로 정렬하여 설치 (건물의 전면폭이 10m초과하는 경우, 건물 양측단에 표시 가능)		○
· 2개 이상 설치시 광고물의 돌출폭 일치			○	
	· 지면으로부터 3m이상 이격하여 설치(인도 없을 경우 4m이상)		○	
지주이 용 간판	수량	· 1개 업소에서 1개의 간판 설치		○
		· 업소가 표시할 경우 설치 가능한 광고물의 총수량에 포함됨		○
	크기	· 1면의 최대면적 2㎡이내, 세로크기는 최대 3m 이내로 설치		○
	표시 방법	· 부지내 입주 업소수를 배분하여 종합안내판 형식으로 설치 권장		○
· 당해 건물의 부지안에 설치, 사유지경계로부터 1m이상 안쪽에 설치			○	
	· 보행자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	

주) 도시, 농어촌 공통 적용

### 특별관리구역 설계지침

#### 적용대상

-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중 경관중점관리구역, 관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옥외광고물 특  
정구역
  - 경관중점관리구역 : 당진동 구시가지, 당진천 주변, 석문국가산업단지, 삼교호 관광지, 면천  
읍성 주변, 당진시청사 가로변
  - 관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 난지도, 왜목, 도비도, 초락도, 안섬포구
  - 산업단지 중 상업지역 : 석문국가산단, 아산국가산단(고대, 부곡), 황해경제자유구역(송악지  
구), 송산2일반산단, 합덕 순성테크노폴리스단지, 합덕 인터스파크 일반산단

#### 설계지침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비고	
공통 사항	디자인	· 지역 또는 거리의 특성을 반영하여 테마를 설정		○	공통	
		· 업소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로고, 엠블럼, 픽토그램 등 을 권장	○		공통	
	표시 방법	· 업소당 광고물의 총수량은 2개 이내(건축물 최상단의 건 물명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과 연립형 지주이용간판은 간 판 총수량에서 제외)		○	공통	
		· 광고내용은 광고물 표시면적 중 각 면의 20% 이내		○	공통	
		· 판류형 간판은 지양하고 입체형 간판 설치		○	공통	
	재료	· 동일 건축물내 광고물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재료 사용		○	공통	
		· 플렉스 등 유연성 원단 사용 및 고풍택 금속재질의 노 출 지양	○		공통	
	조명	· 부드러운 간접조명 방식 및 외부조명방식 권장		○	공통	
		· 내부조명방식의 경우 문자나 도형의 부분조명방식 권장		○	공통	
		· 네온, 점멸방식 및 광원 노출 제한		○	공통	
색채	· 검정색과 빨강색은 간판 전체의 50%이상 금지		○	공통		
가로형 간판	수량	· 1업소당 1개 이내(가각부 2개 이내)		○	공통	
	크기	가로	· 해당 건축물의 가로폭 이내(최대 10m 이내)		○	공통
		세로	· 세로 0.7m 이내		○	공통
		4층 이상	· 글자크기는 0.9m이내		○	공통
	표시 방법	· 판류형 판의 설치 금지하고 입체형으로 설치		○	공통	
		· 3층 이하 정면에 입체형으로 설치하며, 건축 측면 또는 후면의 설치 금지		○	공통	
· 4층이상에는 건물명이나 상징도형에 한하여 건물 상단 중 3면에 입체형으로 된 간판 각각 부착 가능		○	공통			
세로형 간판	표시 방법	· 세로형 간판의 설치를 금지		○	공통	
연립형 간판	수량	· 정면 5층이하 별도 공간에 가로형 간판 설치		○	공통	
	크기	· 연립되는 가로형 간판 1개의 면적최대 1㎡이내		○	공통	
		· 게시 틀의 총면적은 최대 8㎡이내		○	공통	
		· 간판의 두께는 벽면으로부터 20cm이내		○	공통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비고	
돌출형 간판	수량	· 1업소 1개만 표시		○	공통	
	크기	가로	· 광고물의 가로크기 0.8m이내		○	공통
		세로	· 건축물의 1개층 높이 이내로 설치		○	공통
	표시 방법	· 바깥쪽 끝부분은 벽면으로부터 0.8m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세로의 길이는 1.5m이내, 간판두께는 0.5m이내		○	공통	
		· 건물 전면폭이 10m이하인 경우 1줄로, 10m를 초과할 경우에는 건축물의 양측 끝에 각각 1줄로 설치 가능		○	공통	
· 지면으로부터 4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며, 상단은 건물의 벽면높이를 초과해서는 안됨		○	공통			
지주 이용 간판	수량	· 5층이상 건물에 5개업소이상의 업소에 한해 연립형으로 설치	○		공통	
	크기	· 차도 또는 보도 경계선으로부터 1m이상 거리를 두어야 하고, 보행인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아야 함		○	공통	
		· 지면으로부터 상단까지 4m이내, 가로폭은 1m 이내로 함		○	공통	
	표시 방법	· 부지내 입주 업소수를 배분하여 종합안내판 형식으로 설치 권장		○	공통	
		· 당해 건물의 부지안에 설치, 사유지경계로부터 1m이상 안쪽에 설치		○	공통	
· 보행자의 통행 및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	공통			
옥상 간판	설치	· 옥상간판 설치 금지		○	공통	
		· 4층이상 건물로 업소명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경우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 한하여 설치 <sup>5)</sup>		○	공통	
	표시 방법	· 건물옥상바닥의 안쪽에 표시		○	공통	
· 구조물의 높이는 3m이내, 가로길이는 10m 이내로 설치		○	공통			
· 글자높이는 2m 이내		○	공통			
현수막	설치	· 현수막 설치를 금지		○	공통	
		· 현수막 지정계시대를 이용하여 표시		○	공통	
창문 이용 광고물	설치	· 창문이용 광고물 금지		○	공통	
		· 1층 업소에 한해 창문 또는 출입문에 폭 0.2m이내의 띠 형태로 상호, 브랜드, 전화번호를 표시 가능		○	공통	
애드 별론	설치	· 애드별론 설치 금지		○	공통	
전기 이용 광고물	네온류 전광류	· 상업지역에 한하여 설치		○	공통	
		· 입체형 문자도형에 전광류(LED조명 등)를 삽입하여 광원을 직접적으로 표출하지 아니하는 간접조명 형태의 광고물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시설보호지구를 제외한 지역에 설치 가능		○	공통	

주) 비교란의 공통은 특별관리구역 중 경관중점관리구역, 관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 중 상업지역에 공통으로 적용

- 5) 1.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2.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 5. 공공시설물 경관설계지침

### 기본원칙

#### 연계가능한 시설물간의 통합디자인

- 시설물의 설치개수 최소화하고, 기능의 통합화를 위하여 기능 및 설치 위치 등의 연계성을 가지는 요소와 시설물을 추출하고 통합 설치

#### 모든 사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는 사람중심의 유니버설 디자인

- 노약자 및 장애인 등 모든 사용자에게 공공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

#### 주민자율협정제를 반영한 참여디자인

- 주민자율협정제를 통하여 참여형·체험형 디자인 체계를 확립하는 것으로 주민의 아이디어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거주자가 주역이 되는 일상에 밀착한 디자인

#### 자연과 인간친화적 디자인, 미래지향적 순환가능한 디자인의 지속가능한 디자인

-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재 사용, 유연성, 수리의 용이성 등의 내구성을 담보하는 지속가능한 디자인

#### 당진시의 고유콘텐츠를 가미한 지역정체성 디자인

- 당진의 과거인 내포문화, 위인, 관광자원 등 지역 고유의 문화 콘텐츠를 소재로 공공시설물에 반영

### 사용방법

#### 목적

- 일관된 기준 적용을 통한 도시전체 이미지를 통합하고,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독창적인 이미지를 구현함으로써 지역의 아이덴티티를 연출

#### 사용대상

- 공공시설물 허가권자, 경관심의위원회, 제작자, 디자이너 등 공공시설물 제작, 설치, 심의, 허가를 담당하는 모든 공공시설물 관련자

#### 사용시기

- 디자인단계부터 사업승인신청, 심의, 허가, 신고시 사전 검토

#### 적용방법

- 설계지침 적용시 시설물의 규모 및 설치간격, 수량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위계를 설정하고 소규모와 좁은 간격의 시설물은 공공성을 가지도록 하며, 큰 규모와 넓은 설치 간격의 시설물은 독창성을 적용



- 전체적인 통일성 유지와 지속가능하며 효율적인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여 적용하도록 하며,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사용
- 충청남도의 공공디자인 시설물 인증제를 적용운영
- 본 설계지침에 제시된 공공시설물의 규모, 설치 위치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사용

### 경관설계원칙

#### 시설물의 기능을 우선시하는 간결한 디자인

- 단순하고 간결하게 디자인하고 불필요한 장식적 요소 지양
- 각 시설의 모듈화와 일관성이 있는 색채 적용으로 통일성 추구



#### 연계 가능한 시설물간의 통합 설치 디자인

- 시설물의 설치 개수를 최소화하고 기능의 통합화



#### 누구에게나 접근이 쉬운 디자인

- 노약자 및 장애인 등 모든 사용자가 편리한 시설물 계획
- 모든 공간에서 시설물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시설물 설치



#### 유지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

- 파손에 강하고 유지보수가 용이



설계지침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도시 구조물	교량	· 구조적 합리성을 갖지 못한 장식적 요소 제한	○		
		· 교각은 일체화하고, 슈퍼그래픽 사용 지양		○	
		· 구조물을 압도하지 않는 간결한 구조와 형태로 디자인	○		
	육교	· 사용자에게 친근감을 주는 색채 사용		○	
		· 문자나 슈퍼그래픽, 장식의 남용 지양	○		
		· 기능과 무관한 장식적 조명 사용을 지양		○	
	옹벽	· 옹벽 높이는 위압감을 주지 않도록 다단 처리		○	
		· 재료는 식재나 보강토 쌓기 등 친환경 옹벽 권장	○		
		· 벽면 녹화 등 자연재료를 이용한 마감처리	○		
		· 콘크리트 옹벽에 슈퍼 그래픽 적용 지양(간결한 패턴 사용)	○		
	방음벽	· 배수구는 유출수의 흔적이 옹벽에 누적되지 않도록 내림각으로 설치	○		
		· 조망·일조·채광 등을 고려하여 투명한 재료 사용(개방감 확보)	○		
		· 획일화된 재료 및 색채의 사용을 지양(불필요한 혼용 지양)		○	
		· 식재 및 녹화를 적극 권장	○		
	포장	· 높이차가 발생하는 경우 사선 처리로 시각적 피로감 경감	○		
·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나친 경사는 지양		○			
· 자연친화적 재료 및 시공법 사용		○			
가로 시설물	벤치	· 주차장 포장은 투수포장재 사용 권장	○		
		· 인체를 고려한 폭, 높이 등의 규격을 사용하도록 함	○		
		· 신체와 접하는 부분은 라운딩 처리로 상해를 예방함	○		
		· 조립부의 볼트 등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디자인	○		
		· 최소한의 색채와 재료 자체의 색을 사용(유색 페인트 도장 지양)		○	
		· 테마공원이나 특화된 거리의 경우 개성있는 디자인함	○		
	파고라	· 배치장소에 따라 등받이 유무를 구분하여 설치	○		
		· 간결한 형태로 주변으로부터 개방감을 가질 수 있게 함	○		
		· 최소한의 색채와 재료 자체의 색을 사용(유색 페인트 도장 지양)	○		
	휴지통	· 파고라의 구조물 주변에는 식재 및 녹화 권장	○		
		· 조명(가로등) 및 벤치와 인접하여 설치	○		
		· 수거 및 청소 등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기능적 측면 고려	○		
		· 쓰레기의 투입구는 위쪽으로 개방되지 않도록 함	○		
	위생 시설물	공중 화장실	· 원색계열 및 고풍택의 색채 사용 지양		○
			· 꼭 필요한 곳 이외에는 설치 지양	○	
· 장애자 노약자 등을 고려하여 출입구의 턱을 없애고 폭을 확보			○		
음수대		·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장식남용 금지)	○		
		· 통풍이 잘되도록 설계	○		
음수대	· 주변환경을 고려한 조화로운 색채 적용		○		
	·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장식남용 금지)	○			
	· 휠체어 이용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디자인	○			
	· 청결, 배수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	○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가로 시설물	서비스 시설물	자전거 보관대	· 자전거의 보관·회수시 시설물 손상을 막도록 내구성 있는 재료 사용	○	
			· 기능면에서 불필요한 형태는 지양	○	
			· 블라드 등 다른 시설물의 기능을 겸할 수 있도록 설치	○	
			· 자전거도로에 인접한 길가 또는 주요지점의 공지에 설치	○	
	관광 안내소	· 관광지의 특성을 반영한 형태 디자인		○	
		· 과도한 CI, 조명 및 원색의 색채 지양	○		
		·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시설물과의 결합하여 설치	○		
		· 장애인 및 노약자의 사용을 고려하여 설계		○	
	통행 시설물	승강장	· 운전자와 승객이 위치 파악이 용이하도록 단순하고 간결하게 디자인		○
			· 승차대 벽면에 투명재료를 사용하여 개방감을 확보	○	
			· 광고물 부착판이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일체화하여 디자인 <sup>6)</sup>	○	
			· 편의시설 등과 통합하여 설치	○	
			· 고채도 및 고명도의 색 사용 지양		○
			· 도시전체에 일관된 기준의 적용으로 통일감 확보	○	
		· 가로등 및 가로수 사이에 그룹으로 배치(보행로 점유면적 최소화)	○		
		보도 블록	· 표면의 페인트 도장 금지		○
· 자극적인 고채도 색채 및 과도한 패턴 사용 지양			○		
가로 시설물	가로 화분대	· 자연물을 모방한 형상, 과장된 패턴이나 문자의 남용은 지양	○		
		· 플라스틱 등 인공재료 지양, 자연친화적 재료 사용	○		
		· 목재사용시 유색 페인트 도장 지양, 방수·방부·방충 검토		○	
	가로수	· 식생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식재	○		
		· 보행을 방해하지 않는 가로수 식재 위치 설정	○		
		· 보호덮개는 보도면의 높이와 일치하도록 설치		○	
		· 보호덮개는 유지관리 및 청소가 용이하도록 디자인	○		
	보호 시설물	블라드	· 블라드 사이공간 1.5m의 공간을 확보(휠체어 통과 가능)	○	
			· 보행인이 접촉하기 쉬운 모서리 부분은 부드럽게 처리	○	
			·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점자블록과 충분한 간격으로 설치	○	
		· 차량 파손 및 안전에 위험한 석재재료의 사용 지양	○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가로 시설물	보호 시설물	보호 펜스	· 장식적인 패턴을 지양하고 단순하고 간결하게 디자인		○
			· 고광택 재료 사용 지양	○	
			· 보도와 녹지 경계펜스는 자연친화적인 재료 사용	○	
			· 보도와 차도 경계펜스는 차량충돌에 대비하여 튼튼한 재료 사용	○	
	관리 시설물	맨홀	· 보도블록의 색채 패턴과 동일하게 처리하여 일체감 형성	○	
			· 표면의 페인트 도장 금지		○
			· 보도면과 연속성 있는 형태 디자인	○	
		분전반, 배전반	· 색채도안이나 슈퍼그래픽 등 기능과 무관한 장식 적용 지양	○	
			·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	○	
			· 크기의 최소화	○	
	조명 시설물	·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특수도로 사용 등)		○	
		· 지나친 형태변화 및 장식적인 요소 지양(간결한 형태 권장)	○		
		· 지주 정착시 지지대, 볼트, 앵커 등 노출 되지 않도록 디자인	○		
		· 고광택의 재료와 고채도 또는 원색의 색채사용 지양	○		

주) 도시, 농어촌 공통 적용



## 6. 색채 경관설계지침

### 기본원칙

#### 자연과 동화되는 안정적인 색채

- 주변환경과 어울려 돌출되지 않는 색채
- 비슷한 계열로 연속된 색채 이미지 연출
- 원색의 돌출되는 색 사용을 지양한 색채계획



#### 일관성이 느껴지는 정돈된 색채

- 통일된 지붕색채로 인한 정돈된 이미지
- 한 단지에서 입면 색채와 패턴은 비슷하게 계획
- 연결하고 있는 건축 마감재료의 색수준은 동일하게 적용



#### 기능적 구분으로 분리되는 색채

- 고층중층저층으로 나뉘는 입면 색채
- 기단부와 상층부로 분리하여 색채 연출
- 강조와 소거부분을 명확히 하여 색채 적용



#### 주변 환경과 연계되는 색채

- 주변환경과 어울려 돌출되지 않는 색채
- 연속적인 건물에 명도차이로 인한 톤 변화만 주어 연출
- 접한 건축물과 한가지 이상의 동일색을 사용하여 연계성을 높임



#### 보행자 시선에서 변화하는 색채

- 입면 형태나 소재에 따라 변화되는 색채 계획
- 명도와 채도에 변화를 주어 리듬감 있게 연출
- 공간의 특성을 강조하기 위한 다양한 색채 적용



#### 지역의 상징이 되는 독창적인 색채

- 지역적 특징이 느껴지는 이미지
- 시설물에 상징색을 부여하여 개성있는 가로 경관 연출
- 문화적, 역사적 배경등이 반영된 색채 사용



## 사용방법

### 목적

- 일관된 기준의 적용을 통하여 도시전체의 이미지를 통합하고 지역별, 요소별 기능에 적합한 색채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도시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자 함

### 적용범위

- 도시의 건축물, 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 등 모든 환경색채를 대상으로 함

### 사용대상

- 경관심의위원회(색채), 디자이너, 제작자 등 도시색채를 담당하는 모든 색채 관련자

### 사용시기

- 색채 심의 시 별도의 색채 심의 위원회(소위원회)를 두어 심의
- 가이드라인 적용 시기는, 기본계획, 실시설계, 심의, 자문, 허가 등에 따라 적용
- 기본계획인 경우 건축허가 후 적용
- 실시설계는 착공신고 후 적용
- 심의를 받는 경우 준공 1년 전에 적용
- 자문을 받는 경우 준공 1년 전에 적용
- 허가를 받는 경우 건축허가 후 적용

### 적용방법

- 본 설계지침은 건축심의, 자문, 허가 시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함
- 본 설계지침은 건축물 용도별, 시설물 유형별로 구분하고 제시된 색채범위내에서 계획
- 마감재 고유의 색채를 사용할 경우 제시된 색채와 유사한 범위내에서 적용
- 시설물의 색채는 도시의 윤곽이 되는 시설, 배경이 되는 시설 등 기능을 구분하여 계획
- 별도의 주민협정에 의한 특별관리구역을 만들 수 있음

### NCS 색체계

- 본 설계지침은 NCS(Natural Color System)을 기준으로 사용색 범위를 제시하였으며 ISCC-NBS의 톤 범위를 제시함으로써 사용자의 이해를 높임
- 색상범위는 NCS 색체계에 따라 색상, 흑색량, 순색량 으로 구분
  - 색상은 사용색을 나타냄
  - 흑색량은 밝고 어두움을 나타내며, 흑색량이 많을수록 어둡고 적을수록 밝음
  - 순색량은 순색의 정도를 나타내며, 순색량이 많을수록 선명하고, 순색량이 적을수록 탁함

## NCS 색체계의 구조

### NCS 색상환 : 색상(Color)

- 노랑(Y), 빨강(R), 파랑(B), 녹색(G)의 4가지 색상을 기본색상으로 하며, 이 색상을 0부터 100까지 10씩 증가시켜 10단계로 나누어 모두 40가지의 색상으로 구분

### NCS 색삼각형 : 뉘앙스(Nuance)

- 색삼각형은 동일색상에 대한 명도와 채도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고, W-흰색량(Whiteness), S-검정량(독, Schwarz=Blackness), C-순색량(Chromaticness)가 세 꼭짓점에 위치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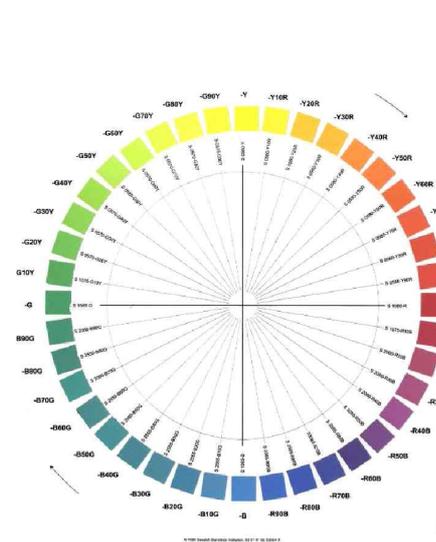
### NCS 색체계의 표기

- 검정량(S), 순색량(C), 색상 순으로 표기
- NCS에서 주어진 색에 대해 흰색량(W), 검정량(S), 순색량(C)의 합은 항상 100으로 가정함(즉,  $W+S+C=100$ )
- 순수한 노랑은 Y이고 노랑에 빨강이 10%배합은 Y10R, 20% 배합은 Y20R로 표시함. 따라서, B90G이면 파랑에 녹색이 90%섞인 색을 뜻함. 즉 이웃한 색상간의 혼합량을 %로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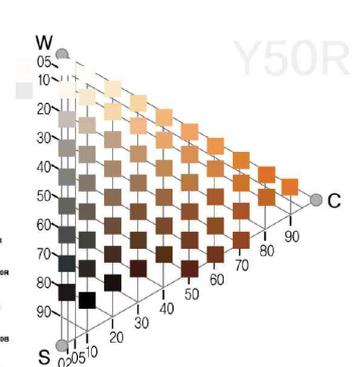
### 용어 해설

- 주조색 :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색으로 입면적의 70%이상을 사용하는 색을 말함
- 보조색 : 주조색을 보조해주는 전체 색채 이미지와 밸런스를 조정하는 색으로 입면적의 10%~30%를 차지하는 색을 말함
- 강조색 : 주조색, 보조색과 대비가 되는 색으로 전체면적의 10%미만의 작은 면적으로 개성을 연출하는 역할을 하는 색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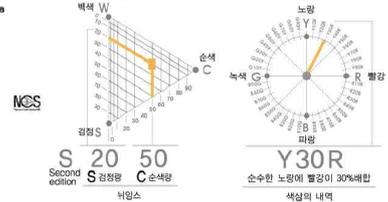
<NCS 색상환>



<NCS 색삼각형>



<NCS 색체계의 표기>



## 심의(자문)

### 목적

-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별도의 색채심을 실시하고, 심의 시 기준으로 사용하는 내용이 필요
- 공동주택, 미관지구 등의 심의대상 건축물은 심의 시 적용기준에 대한 엄격 관리
-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또는 상징물은 심의위원회에서 관리
- 색채심의기준은 사용색과 사용방법에 대한 규정을 제시

### 대상

- 건축심의 대상은 색채심을 득하여야 하며, 건축심의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협의를 통해 도시전체 이미지와 조화되는 색채계획 수립

## 심의 기준

### 사용색에 관한 사항

- 경관은 다양한 요소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요소들 간의역할과 기능을 고려해 조화롭게 계획
- 사용색은 색채 설계지침의 적용색채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사용

### 색의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선택된 색이 사용된 부분의 면적과 위치에 따른 색(명도와 채도)의 돌출여부 심의

###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사항

- 주변 환경색채를 충분히 검토하고 조화롭게 계획되었는지를 심의
- 주변 환경이 자연환경인 경우 건축물에 녹색을 사용할 때는 주의

### 슈퍼그래픽에 관한 사항

- 슈퍼그래픽 사용여부에 관하여 심의(아파트 측벽 슈퍼그래픽 지양)

### 로고와 회사명에 관한 사항

- 로고 및 회사명의 측벽 표기 위치, 개수 등 심의

## 위원회

- 색채심의회는 경관위원회에서 하며, 색채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 색채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건축물, 시설물, 광고물 등의 디자인 분야 중 색채 전문가로 구성)
- 공동주택, 미관지구 등의 심의대상 건축물은 심의시 적용기준에 대하여 엄격 관리
- 골조공사 80%완료 전 심의를 득하여야 함



### 위원회 개최시기

- 색채소위원회는 경관심의위원회의 개최시기와 동일

### 심의 절차

- 민원인 → 시 접수 → 관계부서 협의 → 경관위원회 → 허가(승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와 설계도서를 제출
- 신청서는 신청서류, 체크리스트를 첨부

### 제출서류 작성방법

- 표지는 사업명 및 제출일을 명기하며 재심의시는 표지에 조치반영계획서를 부착하여 제출
- 건축개요를 명기하고 조감도를 배치.(단 조감도가 없을 시에는 배치하지 않아도 됨)
- 대상지 주변 환경에 대한 건축물 색채 현황을 첨부(사진첨부-근중경, 원중경 범위내의 조망점에서 촬영한 사진)
- 색채계획에 있어서 조닝이나, 패턴 등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제시
- 부위별로 사용하는 색을 명기
- 공동건축물의 경우 BI, CI, 동 호수 등의 위치, 크기, 색을 명기한 측벽계획을 작성
- 선택한 색을 어느 부분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가를 명기
- 배색 패턴을 작성하고 적용 사례별 도면을 작성



**제출서류**

도서 : 위치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현장사진, 색채계획도

서류 : 건축개요  
(건축인허가, 신청소와 동일한 체크리스트 종류별 자가진단 등)

## 색채심의(자문)의 제출서류 작성예시

- 색채심의(자문)의 제출서류 작성방법에 따른 예시를 작성한 것임  
 Page 1 : 표지, Page 2 : 건축개요,  
 Page 3 : 주변환경 색채조사(풍토색), Page 4 : 주변환경(건축색) 색채조사,  
 Page 5 : 색채기본방향, Page 6 : 색채팔레트,  
 Page 7 : 상세계획 1(층벽계획 등), Page 8 : 상세계획 2(동호수 표기 등),  
 Page 9 : 입면계획 1(판상형 등), Page 10 : 입면계획 2(탑상형 등)
- 위와 같은 제출서류를 기본으로 하고, 건축유형과 배치상황에 따라 추가 가능





### 색채가이드라인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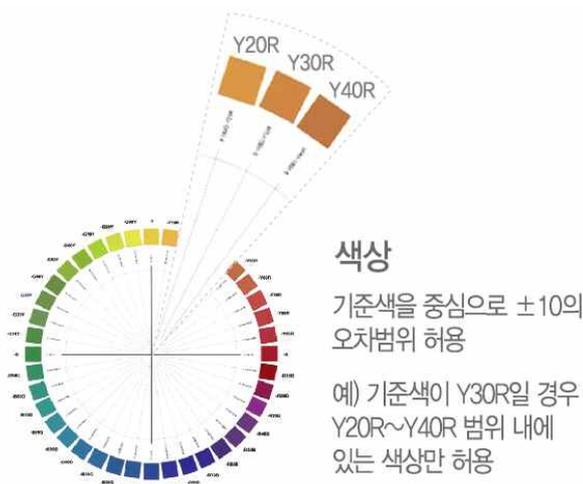
- 색채 가이드라인은 용도별 가이드라인, 요소별 가이드라인으로 구성
- 각 가이드라인은 사용색 범위, 설계지침 등에 따라 적용함
  - 용도별 가이드라인은 단독건축, 공동건축, 상업건축, 공업건축, 공공건축으로 구분하여 지침을 제시
  - 요소별 가이드라인은 가로시설물, 기반시설물, 옥외광고물로 구분하여 지침을 제시

### 색채가이드라인의 오차허용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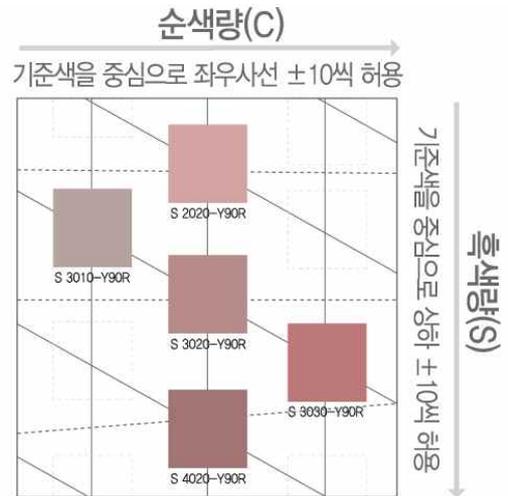
- 마감재의 유형은 인공마감재와, 자연마감재로 분류되며 색채 오차허용 범위는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
- 인공마감재는 색의 오차 허용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자연마감재는 고유의 색상은 허용
- 염료 및 안료, 도장 등의 방식을 통해 색채가 표현되는 인공마감재는 차분한 이미지로 연출하되 용도별 지정 색채 범위를 따름
- 사시류의 경우 가능한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와 톤의 무채색 계열을 권장. 유채색 사용 시에는 용도별 지정 색채 범위를 따름
- 재료자체에 물성에 의해 색채가 표현되는 자연마감재는 건축물의 주조색으로 표현되는 경우, 순색량 30이상은 제한하며, 흑색량 60이하는 건축물 표면적의 50%이하로 사용할 수 있음
- 건축물의 고층부 사용 시 흑색량 40이상, 순색량 20이하의 범위의 색만 사용 가능
- 건축물의 저층부 사용시 순색량 70이상은 제한하며, 흑색량의 범위는 제한하지 않음
- 광택 및 반사율이 고려되어야 할 마감재는 건축물 규모에 비해 넓은 면적의 스텐레스 사용은 제한
- 유리소재는 투명, 저반사(반사율 10%내외) 유리 사용을 권장하며, 고반사 유리나 고채도 컬러 유리 사용은 자제
- 기타 마감재는 상기에 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재료는 건축허가 시 개별적으로 검토

### 소재색의 오차 허용범위

색의 오차 허용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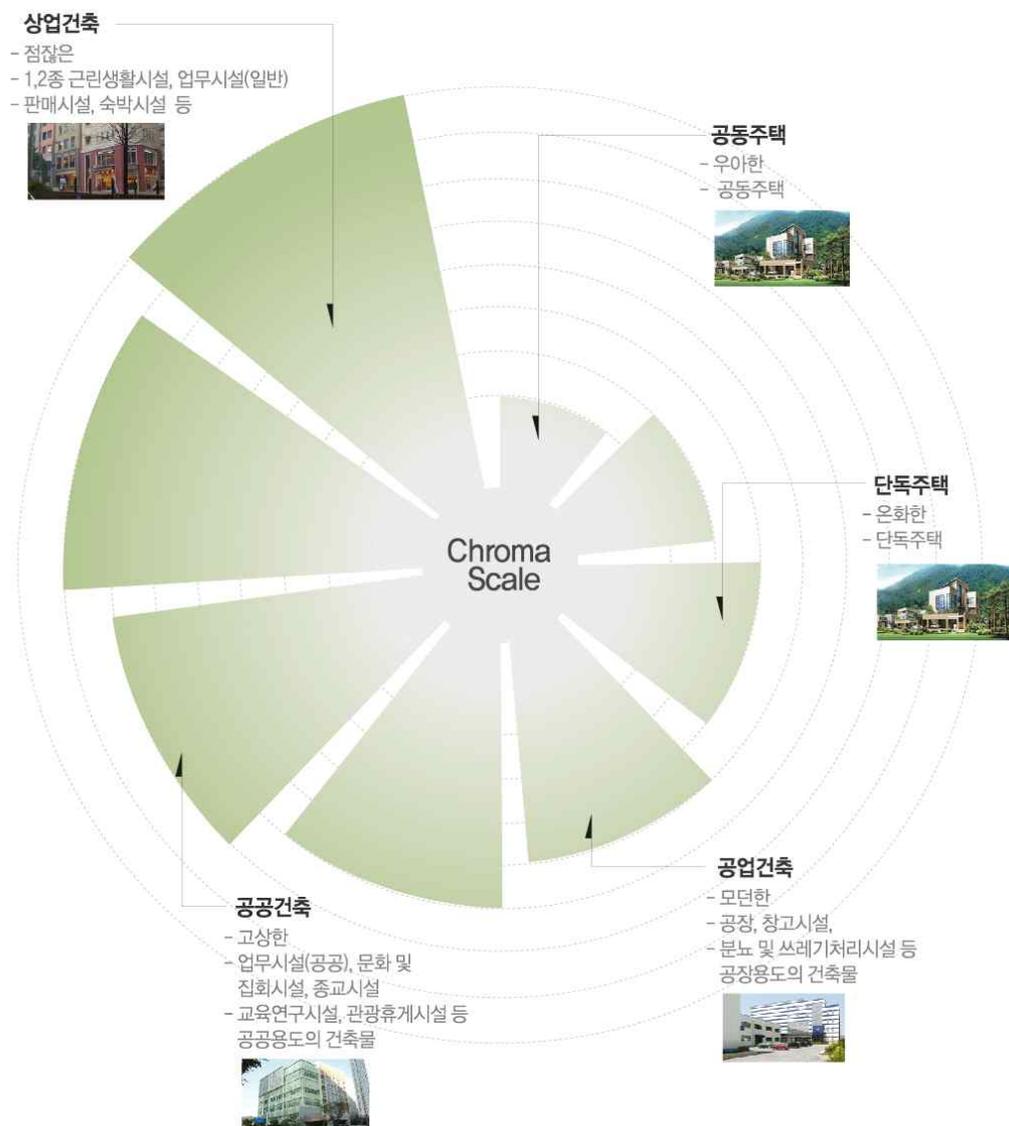
명도, 채도 오차허용범위



## 색채 기본계획

### 용도별 색채기본계획

- 용도별로 건축물의 채도 색채위계를 설정하고 색을 적용하여 질서 있는 색채경관 연출
- 공동주택은 단독주택보다 순색량을 1정도 낮게 사용하여 우아한 이미지로 색채계획
- 단독주택의 순색량은 공업건축보다 낮게 사용하여 온화한 이미지로 색채계획
- 공업건축은 공공건축보다 1정도 낮은 순색량을 사용하여 모던한 이미지로 색채계획
- 공공건축은 상업건축보다 순색량을 낮게 계획하여 고상한 이미지로 색채연출
- 상업건축의 순색량은 공공건축보다 높게 연출하여 점잖은 색채이미지 구현





## 용도별 색채기본계획

### 단독주택(차분하고 편안한 색)

#### 기본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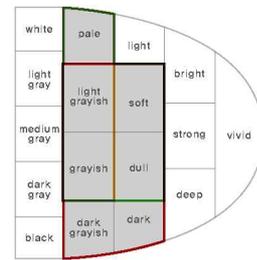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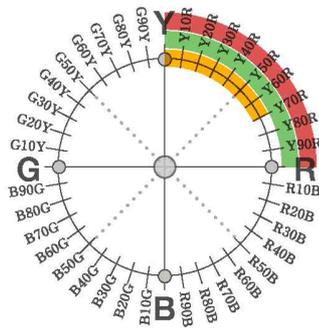
- 주변 경관과 조화로우며 근접한 건물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느낌으로 연출

#### 색채계획 기본방향

- 건축물 색과 유사계열에서 강조하여 주목성을 높임
- G20Y~R30B, R90B~B30G의 색채 사용
- 중명도, 중저채도
-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은 유사색상계열에서 적용

#### • 색상범위

주조색	색상	Y~Y70R, N
	흑색량	10~30
보조색	색상	Y~R, N
	흑색량	10~40
강조색	색상	Y~R, N
	흑색량	20~70
강조색	순색량	2~40



■ 주조색  
■ 보조색  
■ 강조색

#### • 주조색 예시



#### • 보조색 예시



#### • 강조색 예시



#### • 배색예시



## 공동주택(밝고 세련되며 우아한 색)

### 기본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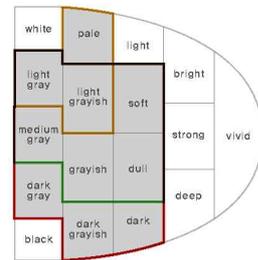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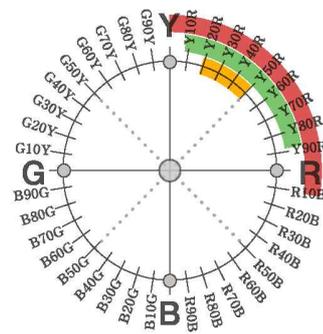
- 주위 건물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상징성이 느껴지도록 하며, 원경에서 단지별 통일된 이미지로 연출

### 색채계획 기본방향

- 형태를 고려하여 단순한 패턴을 적용
- YRY~RB계열의 주조색채 사용
- 고중명도, 중저채도
- 공동주택은 위압감을 해소하는 고명도, 저채도의 색채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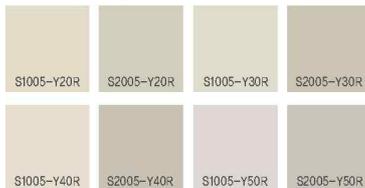
#### • 색상범위

주조색	색상	Y20R~Y50R, N
	흑색량	10~20
	순색량	2~5
보조색	색상	Y10R~Y90R, N
	흑색량	10~40
	순색량	2~20
강조색	색상	Y~R10B, N
	흑색량	20~60
	순색량	10~40



— 주조색  
— 보조색  
— 강조색

#### • 주조색 예시



#### • 보조색 예시



#### • 강조색 예시



#### • 배색예시





## 상업건축(개성있고 변화감있는 색)

### 기본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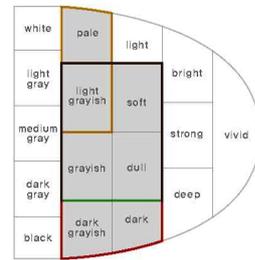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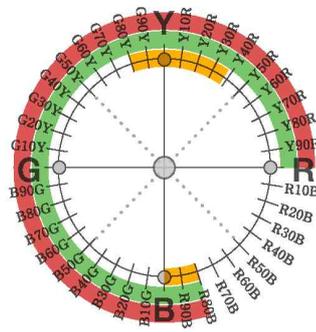
- 다양한 개성이 느껴지며, 주위 건물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단순하며 세련되고 활기찬 느낌으로 연출

### 색채계획 기본방향

- 재료와 색채 사용수를 제한하여 복잡하지 않게 연출
- All Color 색채 사용
- 중명도, 중저채도
- 전면공간은 건축 및 주변 포장과 연계성을 도모

#### • 색상범위

주 조 색	색 상	G80Y~Y40R, R80B~B
	흑색량	5~20
보 조 색	색 상	Y~R, R80B~G90Y
	흑색량	10~50
강 조 색	색 상	Y~R, R80B~G90Y
	흑색량	20~70
강 조 색	순색량	2~40



— 주조색  
— 보조색  
— 강조색

#### • 주조색 예시



#### • 보조색 예시



#### • 강조색 예시



#### • 배색예시



## 공업건축(모던하고 활력있는 색)

### 기본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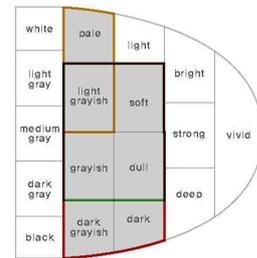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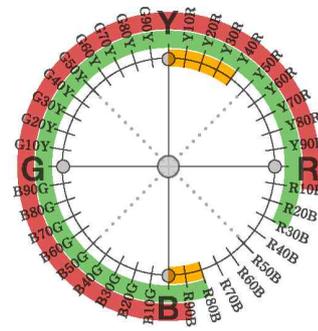
- 건축물의 기능성이 부각되며, 연속성과 상징성이 반영된 차분하고 안정된 이미지 연출

### 색채계획 기본방향

- 장방향의 건축물은 세로의 면으로 분절하여 위압감 해소
- All Color 색채 사용
- 고중명도, 중저채도
- 높은 기둥이나 굴뚝은 원색의 강조색 사용을 금지

#### • 색상범위

주 조 색	색 상	Y~Y40R, R80B~B
	흑색량	5~20
	순색량	2~10
보 조 색	색 상	Y~R30B, R80B~G90Y
	흑색량	10~50
	순색량	2~20
강 조 색	색 상	Y10R~R, R90B~G90Y
	흑색량	20~70
	순색량	2~40



— 주조색  
— 보조색  
— 강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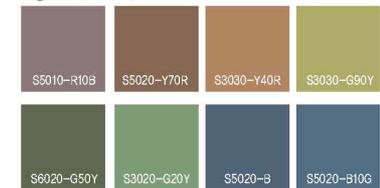
#### • 주조색 예시



#### • 보조색 예시



#### • 강조색 예시



#### • 배색예시





## 공공건축(쾌적하고 부드러운 색)

### 기본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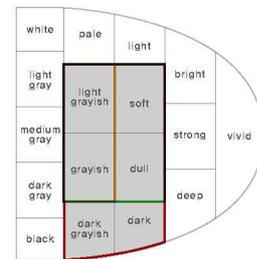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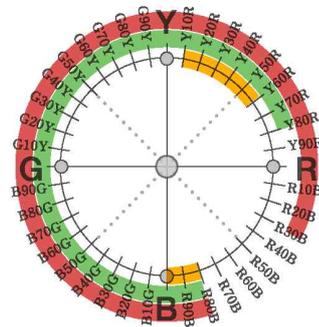
- 연속성과 상징성을 반영하며 기능과 이용행태를 고려하여 쾌적한 느낌으로 연출

### 색채계획 기본방향

- 마감재료와 색채 선정은 건축물 용도에 맞게 계획
- All Color 색채 사용
- 고중명도, 중저채도
- 건물 상단에 CI나 건물명 표기 금지

#### • 색상범위

주 조 색	색 상	Y10R~Y60R, R80B~B
	흑색량	10~30
	순색량	2~10
보 조 색	색 상	Y~Y80R, R80B~G90Y
	흑색량	20~50
	순색량	2~20
강 조 색	색 상	Y~R30B, R80B~G90Y
	흑색량	20~70
	순색량	2~40



— 주조색  
— 보조색  
— 강조색

#### • 주조색 예시



#### • 보조색 예시



#### • 강조색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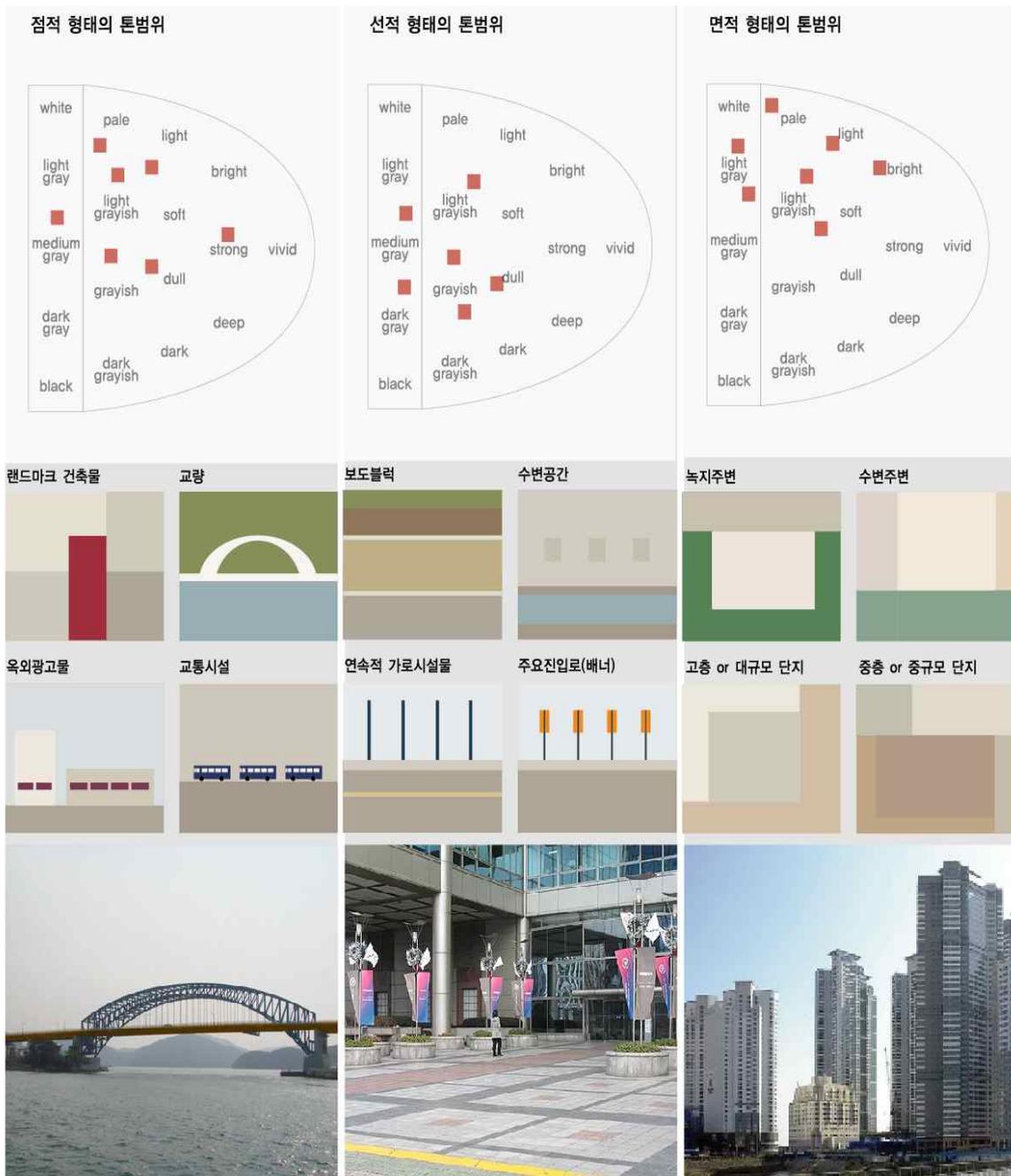


#### • 배색예시



## 시설별 색채 기본계획

- 시설물의 역할에 따라 점, 선, 면적 형태로 구분하여 색채방향을 설정하여 적용
- 점적인 요소는 가로시설물, 기반시설물 등이 이에 속하며 그레이쉬하면서 작은 부분에 고채도의 강조색 사용 가능
- 선적인 요소는 보도블럭, 수변공간 등이 이에 속하며 증명도의 그레이 계열을 기본 색으로 함
- 면적인 요소는 녹지주변, 공동건축이 이에 속하며 고명도의 라이트그레이의 밝은 색을 기본 색으로 함





## 가로시설물(돌출되지 않고 안정된 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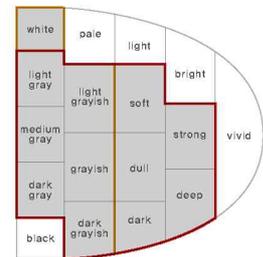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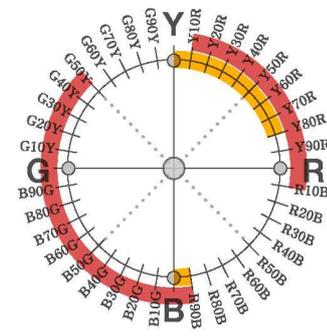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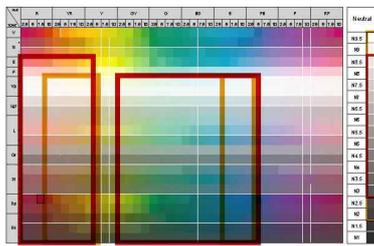
### 기본목표

- 정체성과 안정성이 반영된 통합적인 시설물로 돌출되지 않고 주변과 조화되는 색채

### 색채계획 기본방향

- 안전시설은 부분적으로 강조색을 사용하여 주목성 부여
- All color 색채 사용
- 고중명도, 중저채도
- 과도한 패턴 및 고채도의 색 사용을 금지

#### • 색상범위



— 기초색  
— 상징색

#### • 색상범위

기조색	
색 상	Y~Y80R, R90B~B, N
흑색량	10~80 (난지도 : 2, 60)
순색량	2~10 (난지도 : 30)

강조색	
색 상	Y10R~R10B, R90B~G50Y
흑색량	15~70
순색량	2~60

#### • 기조색 예시



#### • 상징색 예시



#### • 배색예시



## 기반시설물(역할에 따른 색 부여와 상징색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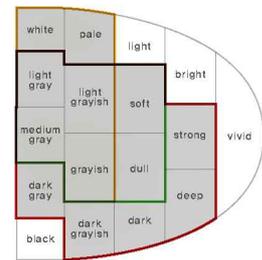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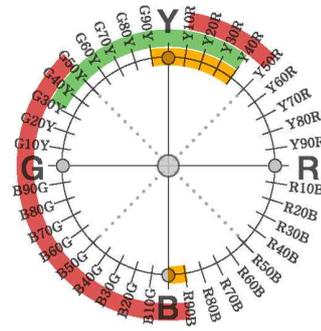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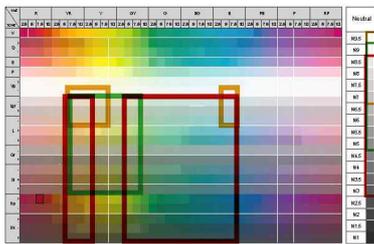
### 기본목표

- 연속성과 상징성, 기능성을 고려하여 구조물의 형태가 부각되며 자연과 조화 되도록 함

### 색채계획 기본방향

- 상징고량 등은 주변지역과의 관계에서 역할에 따라 색을 선정 후 사용
- all Color 색채 사용
- 고증명도, 중저채도
- 방음벽 등 연속적인 구조물은 수직적 분절로 변화감을 부여

#### • 색상범위



— 순응색  
— 조화색  
— 강조색

#### • 색상범위

순응색	
색 상	G90Y~Y40R, R90B~B, N
흑색량	2~30
순색량	2~10

조화색	
색 상	G90Y~Y40R, G30Y~G90Y, N
흑색량	10~50
순색량	2~30

강조색	
색 상	Y10R~Y50R, R90B~G50Y, N
흑색량	15~70
순색량	2~50

#### • 순응색 예시



#### • 조화색 예시



#### • 강조색 예시



#### • 배색예시





## 옥외광고물(건축물 이미지에 맞는 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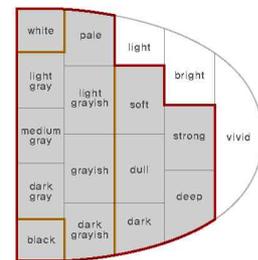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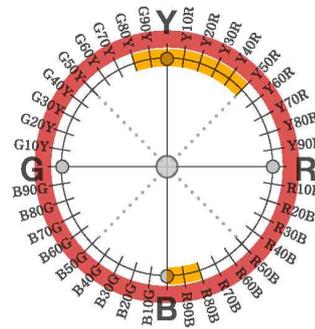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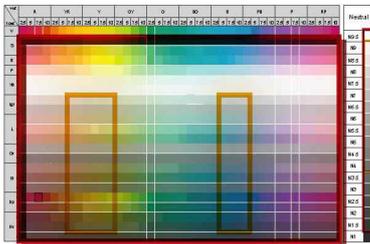
### 기본목표

- 가독성, 정보성, 연속성에 의해 가로 전체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색채

### 색채계획 기본방향

- 가로형 간판의 판형은 동일건물에서 색을 통일하여 사용
- all Color 색채 사용
- 고증명도, 중저채도
- 현수막 색은 하나의 색으로 돌출되지 않게 계획

#### • 색상범위



#### • 색상범위

바탕색	
색 상	G80Y~Y50R, R80B~B, N
흑색량	10~60
순색량	2~30

글자색	
색 상	all color
흑색량	2~85
순색량	2~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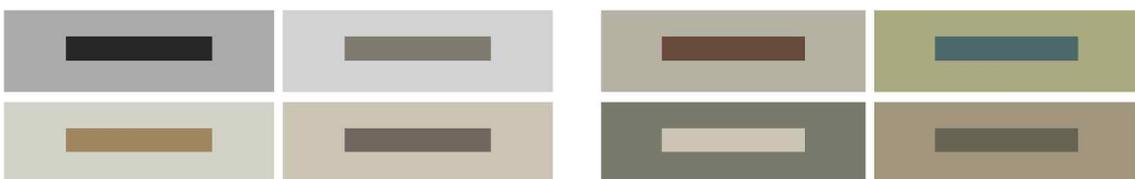
#### • 바탕색 예시



#### • 글자색 예시



#### • 배색예시



## 용도별 색채 경관설계지침

### 주택

#### 적용대상

- 당진시 전지역내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대상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 공동주택과 상업지역내 주거 면적이 30%이상인 주상복합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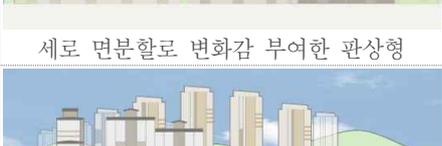
#### 경관설계지침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기본원칙	• 주변경관과 조화로우며, 근접한 건물과 연속성 유지			○
주조색	범위	• 색상 Y~Y70R, N /흑색량 10~30 / 순색량 2~20	예 시 	○
	면적	• 70% 이상		
보조색	범위	• 색상 Y~R, N /흑색량 10~40 / 순색량 2~30	예 시 	○
	면적	• 20~30%		
강조색	범위	• 색상 Y~R, N /흑색량 20~70 / 순색량 2~40	예 시 	○
	면적	• 5% 이내		
단 독 주 택	유사색	• 2가지 이상의 색 사용시 유사색상범위 내에서 사용	○	
	그래픽	• 담장 등에 과도한 그래픽 사용 금지		○
	소재색	• 소재색은 최대한 제시한 색상범위에서 유사한 색 사용	○	
	지붕	• 갈색계열이나 회색계열을 사용하여 통일성을 유지	○	
	옥상	• 옥상설비와 바닥은 채도20 이하의 저채도색 사용	○	
	담장,옹벽	• 주변건축물보다 채도를 낮게 사용하고 자연친화적 재료를 사 용	○	
	창틀,문	• 입면색과 유사계열로 명도만 조절하여 강조되지 않게 사용	○	
	점포형 주거	• 점포층과 주거층이 구분되도록 색을 적용	○	
	우편함	• 고채도 사용을 금하며 건축물과 비슷한 색으로 채도를 낮게 사용	○	
	캐노피	• 대문 및 출입문과 동일하거나 유사색으로 계획	○	
	대문 및 출입문	• 건축물색과 유사계열에서 강조하여 주목성을 높임	○	
	채도기준	• 교통안전표시 또는 사인보다 낮은 채도의 색을 사용	○	
	펜스	• 순색량 15 이하의 저채도색으로 나뭇잎보다 돌출되지 않도록 합	○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기본원칙		· 주위건물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상징성이 느껴지도록 계획		○
		· 원경에서 단지별 통일된 이미지를 연출		○
사용색 수		· 사용색은 단색이나 2~3가지 내에서 적용		○
주조색	범위	· 주조색: 색상 Y20R~Y50R, N / 흑색량 10~20 / 순색량 2~5	예 시 	○
	면적	· 70% 이상		○
보조색	범위	· 색상 Y10R~Y90R, N / 흑색량 10~40 / 순색량 2~20	예 시 	○
	면적	· 30% 이내		○
강조색	범위	· 색상 Y~R10B, N / 흑색량 20~60 / 순색량 10~40	예 시 	○
	면적	· 5% 이내		○
소재색		· 소재색은 최대한 제시한 색상범위에서 유사한 색을 사용	○	
그래픽		· 슈퍼그래픽등에 과도한 그래픽 사용 금지		○
판상형		· 15층 이상 판상형은 상층, 중층, 저층부로 구분하여 계획		○
탑상형		· 탑상형은 저층, 그 이상의 층으로 구분하여 계획 가능	○	
연립주택		· 연립주택은 단색으로 계획 가능	○	
공동주택	상층부	· 상층으로 갈수록高明도 색채의 사용	○	
	저층부	· 저층부는 보행자를 고려하여 중저채도의 차분한 색채 사용	○	
		· 기단부 마감 재료수는 많지 않게 하며 2개 이상시 색상차가 크지 않게 적용	○	
	지붕	· 지붕색은 갈색계열이나 회색계열을 사용하여 통일성을 유지	○	
	설비,몰딩	· 입면색과 동일하거나 유사계열의 돌출되지 않는 색을 사용	○	
	근린생활시설	· 근린생활시설은 상품, 광고물을 고려하여 돌출되지 않는 색을 사용	○	
	창틀,난간	· 입면색과 유사계열로 명도만 조절하여 강조되지않게 사용	○	
	부대시설	· 옥상설비와 바닥은 채도20 이하의 저채도색 사용	○	
	담장, 옹벽	· 주변건축물보다 채도를 낮게 사용하고 자연친화적 재료사용	○	
	펜스	· 가로시설물 색채 설계지침을 준수, 순색량 15이하 색 사용	○	
	측벽	· 형태를 고려하여 단순한 패턴과 중·저채도의 색을 적용	○	
		· 마을명, 동호수, 건설사 로고 등의 색채는 외장색채와 유사 조화	○	
		· 건설사 로고는 10개 동 이하에서는 1개 이내, 20개동 이하에서는 3개 이내, 20개 동 이하에서는 4개 이하로 사용	○	
		· 9층이하의 낮은 건물은 상층부 동번호 표기 제외 가능	○	
		· 마을명, 동번호의 크기 및 위치는 측벽 그래픽 표기법 준수	○	
		· 측벽의 슈퍼그래픽은 금함(단,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가능)	○	
보도포장	· 보도포장은 단순한 패턴으로 저채도의 유사계열로 계획	○		
출입구	· 동출입구는 고채도의 강조색 사용을 금지	○		
	· 건축물과 채도와 명도를 비슷하게 연출	○		

주) 도시, 농어촌 공통 적용

구분	권장 (○)	지양 (×)
단독주택	 2가지 이상 사용시 유사색으로 계획	 2가지이상의 상이한 색 사용
	 근접한 건축물과 동일한 색이나 유사색을 적용	 근접한 건축물과 이질감 있는 색 사용
	 그래픽 사용을 자제해 주변경관과 조화	 과도한 그래픽 사용
	 통일된 지붕색채	 이질적이고 자연 경관을 해치는 지붕색채
	 건축물보다 채도가 낮은 담장	 건축물보다 채도가 높은 담장
	공동주택	 단지별 통일된 이미지 연출
 연속성이 느껴지는 유사계열로 색채계획		 다양한 색으로 색채계획
 세로 면분할로 변화감 부여한 판상형		 이질적인 면분할을 적용한 판상형
 저채도의 절제된 그래픽을 적용한 입면계획		 과도한 그래픽을 적용한 입면



## 용도별 색채 경관설계지침

### 상업건축물

#### 적용대상

- 당진시 전지역내 상업건축물

#### 경관설계지침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기본원칙	• 다양한 개성이 느껴지며, 주위 건물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단순하며 세련되고 활기찬 느낌으로 연출			○
주조색	범위	• 색상 G80Y~Y40R, R80B~B / 흑색량 5~20/ 순색량 2~10	예시 	○
	면적	• 60% 이상		
보조색	범위	• 색상 Y~R, R80B~G90Y / 흑색량 10~50 / 순색량 10~30	예시 	○
	면적	• 30% 내외		
강조색	범위	• 색상 Y~R, R80B~G90Y / 흑색량 20~70 / 순색량 2~40	예시 	○
	면적	• 10% 이내		
연속성	• 근접한 대상물에는 동일한색이나 유사색을 적용		○	
유사색	• 2가지 이상의 색 사용시 유사색상범위 내에서 사용		○	
그래픽	• 건축입면 등에 과도한 그래픽 사용을 금지			○
소재색	• 소재색은 최대한 제한한 색상범위에서 유사한 색을 사용		○	
지붕색	• 지붕색은 갈색계열이나 회색계열을 사용하여 통일성 유지		○	
창틀,난간	• 입면색과 유사계열로 명도만 조절하여 강조되지 않게 사용		○	
옥상	• 옥상설비와 바닥은 채도20이하의 저채도 색을 사용		○	
차양막	• 차양막은 중채도 이하의 색을 사용하고 동일건물은 동일한색으로 통일감을 유지		○	
전면공간	• 전면공간은 건축 및 주변포장과 연계성을 도모하여 돌출되지 않도록 함		○	
연결구조물	• 연결구조물은 건물입면과 유사한 색을 적용		○	
재료사용수	• 재료와 색채 사용수를 제한하여 복잡하지 않게 연출		○	
외벽	• 노출된 건물 외벽은 모든면의 마감수준을 유사하게 사용		○	
유리	• 유리가 건물의 70%이상이면서 고채도 착색유리가 아닐 경우 사용색 범위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됨		○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 색채 설계지침에 준하여 적용			○

주) 도시, 농어촌 공통 적용



## 용도별 색채 경관설계지침

### 공업건축물

#### 적용대상

- 당진시 전지역내 공업건축물

#### 경관설계지침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기본원칙	• 건축물의 기능성이 부각되며, 연속성과 상징성이 반영된 차분하고 안정된 이미지로 연출			○
주조색	범위	• 색상 Y~Y40R, R80B~B / 흑색량 5~20 / 순색량 2~10	예시 	○
	면적	• 70% 이상		
보조색	범위	• 색상 Y~R30B, R80B~G90Y / 흑색량 10~50 / 순색량 2~20	예시 	○
	면적	• 30% 이내		
강조색	범위	• 색상 Y10R~R, R90B~G90Y / 흑색량 20~70 / 순색량 2~40	예시 	○
	면적	• 5% 이내		
사용색수	• 건축물의 특성에 따라 2~3가지의 이내 색채로 계획			○
강조색수	• 강조색을 적용할 경우 2가지 이내의 색으로 제한			○
시설집적	• 시설이 집적된 장소 또는 산업단지는 사업소간의 통일감 있는 색채계획			○
거대시설	• 규모와 높이가 거대한 시설은 고명도의 위압감을 해고하는 색채 사용			○
연속성	• 근접한 대상물에는 동일한 색이나 유사색을 적용하여 연속성을 유지		○	
유사색	• 2가지 이상의 색 사용시 유사색상 범위 내에서 사용		○	
고채도 강조	• 부분적으로 고채도의 강조색 사용은 가능하나 넓은 면적은 금지			○
그래픽	• 담장 등에 과도한 그래픽 사용을 금지			○
소재색	• 최대한 제시한 색상 범위에서 유사한 색을 사용		○	
지붕색	• 건축색과 유사계열의 저채도의 색을 사용하며 지붕에 CI, BI의 적용을 금지		○	
기둥, 굴뚝	• 높은기둥이나 굴뚝은 원색의 강조색 사용을 금지		○	
패턴	• 장방향의 건축물은 세로의 면으로 분절하여 위압감이 해소되도록 함		○	
옹벽	• 건물과 색차가 없는 돌출되지 않는 색채를 사용		○	
펜스	• 펜스는 가로시설물 색채설계지침을 준수하고, 순색량 15이하 색을 사용		○	

주) 도시, 농어촌 공통 적용



## 용도별 색채 경관설계지침

### 공공건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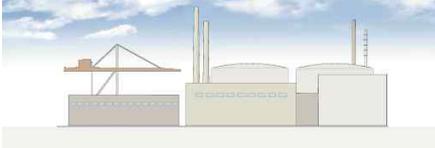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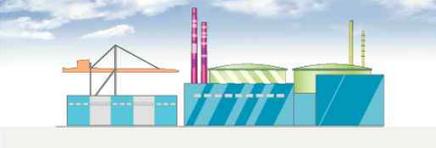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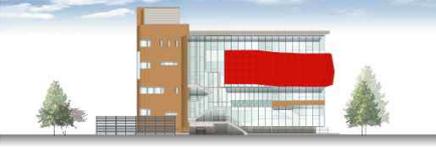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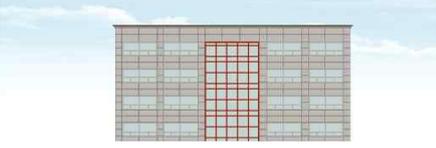
#### 적용대상

- 당진시 전지역내 공공건축물

#### 경관설계지침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기본원칙	• 연속성과 상징성을 반영하며, 기능과 이용행태를 고려하여 쾌적한 느낌으로 연출			○
주조색	범위	• 색상 Y10R~Y60R, R80B~B / 흑색량 10~30 / 순색량 2~10	예 	○
	면적	• 60% 이상		○
보조색	범위	• 색상 Y~Y80R, R80B~G90Y / 흑색량 20~50 / 순색량 2~20	예 	○
	면적	• 20~30%		○
강조색	범위	• 색상 Y~R30B, R80B~G90Y / 흑색량 20~70 / 순색량 2~40	예 	○
	면적	• 10% 이내		○
사용색수	• 단색이나 2~3가지 내에서 적용		○	
연속성	• 근접한 대상물에는 동일한색이나 유사색을 적용하여 연속성을 유지		○	
유사색	• 2가지 이상의 색사용시 유사색상범위내에서 사용		○	
배색	• 주조색 또는 주조색과 보조색만 사용하여 통일된 이미지 연출 가능		○	
유리색	• 유리는 고채도 색유리를 제외하고 사용색 범위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됨		○	
그래픽	• 담장 등에 과도한 그래픽 사용을 금지			○
소재색	• 소재색은 최대한 제시한 색상범위에서 유사한 색을 사용		○	
지붕색	• 건축색과 유사계열의 저채도의 색을 사용하며 지붕에 CI, BI의 적용을 금지			○
마감재료	• 마감재료의 종류는 3가지를 넘지않으며,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색채를 사용		○	
옹벽	• 옹벽은 돌출되지 않는 색채, 친자연적 재료를 사용하여 조화롭게 계획		○	
지붕	• 지붕색은 갈색계열, 회색계열로 적용			○
펜스	• 펜스는 가로시설물 색채 설계지침을 준수하고, 순색량 15이하 색을 사용			○
건물명	• 건물상단에 CI나 건물명을 과도하게 표기하는 것을 금지			○
마감재료	• 마감재료와 색채선정은 건축물 용도에 맞게 계획		○	
공공시설	• 공공업무시설은 신뢰감을 주는 회색조의 차분한 색채계획			○
문화시설	• 문화시설은 난색계열의 저채도 색채로 친근감있는 색채계획			○
교육시설	• 교육연구시설은 중고채도의 강조색으로 경쾌한 색채계획			○

주) 도시, 농어촌 공통 적용

구분	권장 (○)	지양 (×)	
공업 건축물	 넓은 면적에 저채도의 색채 사용	 넓은면적에 고채도의 돌출색 사용	
	 3색이내의 유사색 사용	 과도한 색채사용	
	 통일된 지붕색채	 이질적이고 자연경관을 해치는 지붕색채	
	 정리된 그래픽과 차분한 색채 사용	 과도한 그래픽과 색채 사용	
	공공 건축물	 차분한 저채도의 공공시설	 부적합한 고채도색 적용
		 중저채도의 난색계열 사용	 과도한 고채도색 사용
 작은면적에 경쾌한 강조색 사용		 특색없는 색 적용	
 외장색과 동일계열의 저명도색 창틀		 고채도의 돌출된 창틀색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기반 시설물	사용색수	· 사용색은 단색이나 2~3가지 내에서 적용	○	
	연속성	· 근접한 대상물에는 동일한색이나 유사색을 적용하여 연속성 유지	○	
	유사색	· 2가지 이상의 색사용시 유사색상 범위 내에서 사용	○	
	소재색	· 소재색은 최대한 제시한 색상범위에서 유사한 색을 사용	○	
	배색	· 2가지 이상의 색채 사용시 유사색상 범위내에서 사용	○	
	상징시설물	· 상징교량등은 주변지역과의 관계에서 역할에 따라 색을 선정 후 사용	○	
	대규모 시설물	· 장대교 및 500m 이상의 방음벽은 채도가 낮은 단색으로 적용	○	
	소규모 시설물	· 소규모의 시설물중 육교의 계단과 교량 등은 구조물의 부위별 색을 통일감 있게 사용	○	
	패턴	· 방음벽등 연속적인 구조물은 수직적 분절로 변화감 부여	○	
	복잡한 형태	· 교량 등 구조물의 형태가 복잡한 구조물은 단색으로 계획	○	
	단순한 형태	· 방음벽 등 연속적인 구조물은 수직적 분절로 변화미 부여	○	
	지하차도	· 지하차도는 밝고 경쾌한 색채를 사용하고, 과도하지 않은 그래픽 가능	○	
	조형물	· 조형물 디자인은 디자인 개념에 맞추어 자유롭게 계획 가능	○	

주) 도시, 농어촌 공통 적용



구분	권장 (○)	지양 (×)
가로 시설물	<p>통합적인 시설물 색채계획</p>	<p>정체성 없는 다양한 색 사용</p>
	<p>근접한 대상물에 동일색 적용</p>	<p>연속성 없는 색 사용</p>
	<p>저채도의 색 사용</p>	<p>이질적이고 자연 경관을 해치는 고채도의 색 사용</p>
	<p>주목성을 높이는 부분 강조색 사용</p>	<p>넓은 면적의 강조색 사용</p>
	<p>저채도의 단일색 적용</p>	<p>고채도의 다양한 색 적용</p>
	기반 시설	<p>설치 위치에 따른 순응, 조화, 강조에 의한 색 사용</p>
<p>2가지이상 적용 시 유사색상 범위에서 사용</p>		<p>유사하지 않은 범위의 색 사용</p>
<p>유사색의 절제된 색 적용</p>		<p>과도한 그래픽 적용</p>

## 시설물 색채 경관설계지침 옥외광고물

### 적용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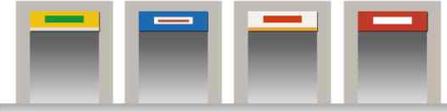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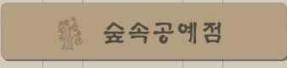
- 당진시 전지역내 옥외광고물

### 경관설계지침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기본원칙	• 가독성, 정보성, 연속성에 의해 가로 전체의 질서를 유지 할 수 있는 색채 계획		○
	•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지역별 이용행태를 고려한 색채 사용		○
바탕색 범위	• 색상 G80Y~Y50R, R80B~B, N / 흑색량 10~60 / 순색량 2~30	예 	○
글자색 범위	• 색상 all color / 흑색량 2~85 / 순색량 2~60	예 	○
사용색수	• 사용색은 단색이나 2~3가지 내에서 적용	○	
연속성	• 동일한색이나 유사색을 적용하여 연속성 유지	○	
유사색	• 2가지 이상의 색사용시 유사색상범위 내에서 사용	○	
소재색	• 소재색은 최대한 제시한 색상범위에서 유사한 색을 사용	○	
가로형간판	• 가로형 간판의 판형은 동일건물에서 색을 통일하여 사용	○	
돌출형간판	• 돌출형 간판은 강조색 사용을 지양하고, 중저채도의 색으로 통일하여 돌출색을 방지	○	
지주형간판	• 지주형 간판은 색을 통일하여 사용	○	
현수막	• 현수막색은 하나의 색으로 돌출되지않게 계획	○	
차양막	• 동일 건물 내에서 차양막의 색채는 통일	○	
주거지역	• 주거지역은 저채도의 색채 사용으로 차분한 이미지 부여	○	
상업지역	• 상업지역은 중채도 이하의 색사용으로 경쾌한 이미지 부여	○	
문화자원	• 문화자원이나 자연자원 주변은 문화, 자연 배려한 색채 사용	○	
사용부위	• 옥외광고물은 사용부위에 따라 배경색과 글자색으로 구분	○	
그래픽	• 배경에 과도한 그래픽 사용 금지	○	
글자색	• 글자색은 사용색 범위내에서 배경색과 유사계열의 색 사용	○	
로고,심볼	• 브랜드 로고나 심볼 등은 순색량을 조절하여 글자색 범위 내에서 적용	○	
사용규제	• 넓은 면적의 고채도색 사용은 규제(30%이하 적용)		○
	• 빨간색이나 검정색은 간판 전체면적의 50%이상 사용금지		○

주) 도시, 농어촌 공통 적용



권장 (○)	지양 (×)
 <p data-bbox="555 533 810 566">제시한 색 범위에서 사용</p>	 <p data-bbox="946 533 1385 566">제시한 색 범위를 벗어난 고채도의 색 사용</p>
 <p data-bbox="555 790 810 824">건축물과 유사한 관형 색</p>	 <p data-bbox="962 790 1369 824">건축물 색과 이질적인 다양한 색의 관형</p>
 <p data-bbox="539 1048 834 1081">2~3가지 내의 저채도색 사용</p>	 <p data-bbox="1042 1048 1289 1081">3가지 이상의 원색 사용</p>
 <p data-bbox="555 1305 818 1339">중·저채도색의 돌출형 간판</p>	 <p data-bbox="1018 1305 1313 1339">다양한 고채도의 돌출색 사용</p>
 <p data-bbox="491 1574 882 1608">동일 건물에서 동일 색 적용한 차양막</p>	 <p data-bbox="1034 1563 1297 1619">동일 건물에서 2가지 이상의 고채도색 적용한 차양막</p>

## 특별관리구역 색채 경관설계지침

### 적용대상

-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내의 환경색채
  - 경관중점관리구역 : 당진동 구시가지, 당진천 주변, 석문국가산업단지, 삼교호 관광지, 면천읍성 주변, 당진시청사 가로변
  - 지구단위계획구역
  - 도시개발구역 : 당진1지구, 대덕수청지구, 송악지구, 우강송산지구
  - 관광형 : 난지도, 왜목, 도비도, 초락도, 안섬포구
  - 주거형 : 덕마리지구(신성대학 주변), 한진리지구
  - 산업단지 : 석문국가산단, 아산국가산단(고대, 부곡), 황해경제자유구역(송악지구), 송산일반산단, 합덕 지방산단, 합덕 순성테크노폴리스단지, 합덕 인더스파크 일반산단
  - 경관협정구역 : 향후 추가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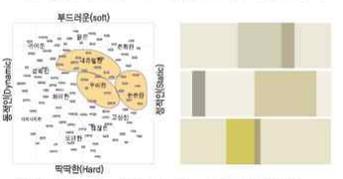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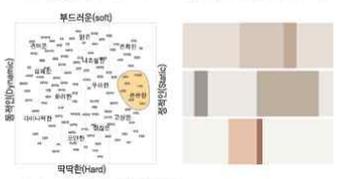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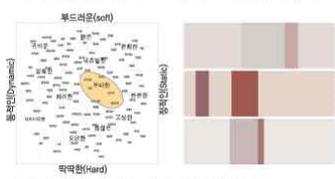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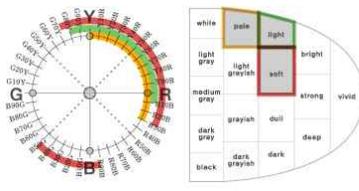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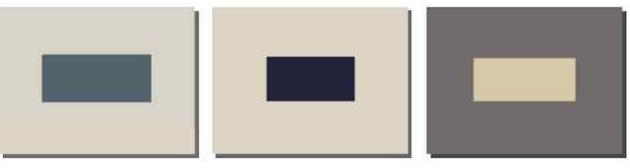
### 경관설계지침(경관중점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단지)

항목	지침내용	권장	필수	비고
기본방향	• 구역별 대표이미지와 테마색을 중심으로 단정하고 정돈된 색채환경을 연출		○	공통
사용 색 범위	• 사용색 범위를 지정하고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여 설정		○	공통
권역구분	• 권역구분을 통한 색채이미지 부여로 권역별 특성을 구현	○		공통
용도구분	• 용도구분을 통해 건축물의 특징과 기능을 고려한 색채계획		○	공통
시설물	• 시설물의 규모와 위치에 따른 명도, 채도 위계를 설정하여 색채를 적용		○	공통
지붕	• 지붕색은 구역별로 대표이미지에 적절한 테마색을 적용하여 통일된 경관을 연출		○	공통
권역	• 해안교류권역은 푸른중심권역과 청정문화권역보다 명도를 높게 설정		○	난지도, 왜목, 도비도, 초락도, 안섬포구, 덕마리지구, 한진리지구, 석문국가산단, 송산일반산단, 아산국가산단, 삼교호관광지
주거용지	• 주거용지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편안한 이미지로 설정		○	공통
단독주택용지 사용색	• 단독주택용지는 주조색·보조색·강조색의 사용색 범위, 사용색수 등의 사용색을 설정		○	공통



항목	지침내용	권장	필수	비고
단독주택용지 색사용법	· 단독주택용지는 입면색채, 지붕색채, 경계부색, 점포형주택 등의 색사용법을 설정	○		공통
공동주택용지 사용색	· 공동주택용지는 구조색·보조색·강조색의 사용색 범위, 사용색수 등의 사용색을 설정	○		공통
공동주택용지 색사용법	· 공동주택용지는 입면디자인, 측벽그래픽, 동호수 표기, 연립형 등의 색사용법을 설정	○		공통
상업용지 사용색	· 상업용지는 구조색·보조색·강조색의 사용색 범위, 사용색수 등의 사용색을 설정		○	공통
상업용지 색사용법	· 상업용지는 입면디자인, 구조물, 재료색, 고층형과 저층형, 용도별 등의 색사용법을 설정		○	공통
공업용지 사용색	· 공업용지는 구조색·보조색·강조색의 사용색 범위, 사용색수 등의 사용색을 설정		○	석문국가산단, 아산국가산단, 송산일반산단, 합덕순성테크노폴리스단지, 합덕지방산단
공업용지 색사용법	· 공업용지는 입면디자인, 지붕색, 그래픽, 구조물, 장방형 등의 색사용법을 설정		○	합덕인더스파크 일반산단
공공용지 사용색	· 공공용지는 구조색·보조색·강조색의 사용색 범위, 사용색수 등의 사용색을 설정		○	공통
공공용지 색사용법	· 공공용지는 용도와 역할에 따라 입면디자인, 그래픽, 구조물 등의 색사용법을 설정		○	공통
가로시설물 사용색	· 가로시설물은 구조색·보조색·강조색의 사용색 범위, 사용색수 등의 사용색을 설정		○	공통
가로시설물 색사용법	· 가로시설물은 점·선·면의 사용면적과 순응·조화·강조의 공간역할에 따른 색사용법을 설정		○	공통
옥외광고물 사용색	· 옥외광고물은 구조색·보조색·강조색의 사용색 범위, 사용색수 등의 사용색을 설정		○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색사용법	· 옥외광고물은 유형과 설치위치에 따라 배경색, 글자색, 배색 등의 색사용법을 설정		○	특정구역
색채관리	· 색채관리방법을 제시	○		

주) 비고란의 공통은 특별관리구역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

구분	지침내용																		
기본 방향	<p>지구단위계획구역1 Y계열, soft톤, 내추얼이미지</p>  <p>해안을 접하고 있는 지역은 부드럽고 내추얼한 색채연출</p>	<p>지구단위계획구역2 YR계열, pale톤, 은은한이미지</p>  <p>도심 속 지역은 은은한 색채연출</p>	<p>지구단위계획구역3 R계열, dull톤, 우아한이미지</p>  <p>자연 속 지역은 중,저채도의 우아한 색채연출</p>																
사용색 범위	 <table border="1" data-bbox="694 571 1396 795"> <tr> <td><b>주조색 대표색</b></td> <td>S1502-Y, S1005-Y20R, S1005-Y50R, S1005-Y40R</td> <td rowspan="3"><b>색상범위</b></td> </tr> <tr> <td><b>보조색 대표색</b></td> <td>S1010-Y30R, S1020-Y30R, S2005-Y50R, S3010-Y30R</td> </tr> <tr> <td><b>강조색 대표색</b></td> <td>S4005-Y50R, S4020-Y, S4020-Y40R, S4020-Y80R</td> </tr> <tr> <td><b>주조색</b></td> <td>색상 Y~R30B, N / 흑색량 2~30 / 순색량 2~10</td> <td></td> </tr> <tr> <td><b>보조색</b></td> <td>색상 G80Y~R10B, N / 흑색량 5~40 / 순색량 2~30</td> <td></td> </tr> <tr> <td><b>강조색</b></td> <td>색상 G70Y~R30B, R90B~B50G / 흑색량 5~70 / 순색량 2~40</td> <td></td> </tr> </table>			<b>주조색 대표색</b>	S1502-Y, S1005-Y20R, S1005-Y50R, S1005-Y40R	<b>색상범위</b>	<b>보조색 대표색</b>	S1010-Y30R, S1020-Y30R, S2005-Y50R, S3010-Y30R	<b>강조색 대표색</b>	S4005-Y50R, S4020-Y, S4020-Y40R, S4020-Y80R	<b>주조색</b>	색상 Y~R30B, N / 흑색량 2~30 / 순색량 2~10		<b>보조색</b>	색상 G80Y~R10B, N / 흑색량 5~40 / 순색량 2~30		<b>강조색</b>	색상 G70Y~R30B, R90B~B50G / 흑색량 5~70 / 순색량 2~40	
<b>주조색 대표색</b>	S1502-Y, S1005-Y20R, S1005-Y50R, S1005-Y40R	<b>색상범위</b>																	
<b>보조색 대표색</b>	S1010-Y30R, S1020-Y30R, S2005-Y50R, S3010-Y30R																		
<b>강조색 대표색</b>	S4005-Y50R, S4020-Y, S4020-Y40R, S4020-Y80R																		
<b>주조색</b>	색상 Y~R30B, N / 흑색량 2~30 / 순색량 2~10																		
<b>보조색</b>	색상 G80Y~R10B, N / 흑색량 5~40 / 순색량 2~30																		
<b>강조색</b>	색상 G70Y~R30B, R90B~B50G / 흑색량 5~70 / 순색량 2~40																		
용도 구분																			
가로 시설물 색사용	<p>점적 형태의 톤범위    선적 형태의 톤범위    면적 형태의 톤범위    순응    조화    강조</p> 																		
옥외 광고물 색사용	 <table border="1" data-bbox="965 1332 1396 1523"> <tr> <td><b>배경색</b></td> <td>색상 Y~R30B, N / 흑색량 2~30 / 순색량 2~10</td> </tr> <tr> <td><b>글자색</b></td> <td>색상 G80Y~R10B, N / 흑색량 5~40 / 순색량 2~30</td> </tr> </table>			<b>배경색</b>	색상 Y~R30B, N / 흑색량 2~30 / 순색량 2~10	<b>글자색</b>	색상 G80Y~R10B, N / 흑색량 5~40 / 순색량 2~30												
<b>배경색</b>	색상 Y~R30B, N / 흑색량 2~30 / 순색량 2~10																		
<b>글자색</b>	색상 G80Y~R10B, N / 흑색량 5~40 / 순색량 2~30																		
색채 관리	<p>색채심의    재도장    오차허용범위</p>  <p>순색량(C) 기준: 70% 이상 순색량으로 좌우시선 ±10% 허용</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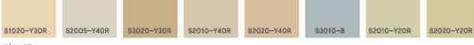


난지도 등(도서 및 해안/해안교류권역) 색채 경관설계 지침

항목		지침내용	권장	필수	비고
기본방향		· 남프랑스풍의 테마색을 적용하여 온화하며 밝고 경쾌한 이미지를 연출		○	공통
사용색 범위	주조색	· 색상 Y20R~Y40R, R90B, N / 흑색량 2~70 / 순색량 2~20	○		공통
	보조색	· 색상 Y20R~Y40R, R90B~B50G / 흑색량 10~40 / 순색량 2~30	○		공통
	강조색	· 색상 Y20R~Y70R, B~B50G / 흑색량 20 ~40 / 순색량 10~40	○		공통
사용색 면적		· 면적에서 주조색은 60~70%, 보조색은 20~30%, 강조색은 10% 미만의 범위로 적용		○	공통
사용색 수		· 사용색수는 2~3색으로 하고, 입면은 가급적 단색으로 하며 2색 이상 사용 시 유사색으로 함		○	공통
연속성		· 인접 건축물과 동일색이나 유사색을 적용하여 연속성을 유지		○	공통
배색		· 외장에 2가지 이상의 색 사용 시 사용하고 어두운 색을 하단에 적용	○		공통
주거 건축물	주조색	· 색상 Y20R~Y30R / 흑색량 5~20 / 순색량 5~10	○		공통
	보조색	· 색상 Y20R~ Y30R / 흑색량 10~20 / 순색량 5~20			
	강조색	· 색상 Y40R~Y70R / 흑색량 20~40 / 순색량 10~30			
상업 건축물	주조색	· 색상 Y20R~Y40R / 흑색량5~20 / 순색량5~10	○		공통
	보조색	· 색상 Y20R~Y40R / 흑색량10~20 / 순색량5~20			
	강조색	· 색상Y40R~Y70R / 흑색량20~40 / 순색량10~30			
공공 건축물	주조색	· 색상 Y20R~Y30R / 흑색량 5~20 / 순색량 5	○		공통
	보조색	· 색상 Y20R~Y30R / 흑색량 5~20 / 순색량 5~10			
	강조색	· 색상 Y20R~Y40R / 흑색량 20~40 / 순색량 5~20			
공업 건축물	주조색	· 색상 Y10R~Y50R, R70B~B30G / 흑색량5~20 / 순색량2~5	○		공통
	보조색	· 색상 G70Y~Y60R, R60B`B80G / 흑색량10~70 / 순색량2~5			
	강조색	· 색상 all color / 흑색량 15~70 / 순색량 10~25			
규모		· 고층건축물은 흑색량 5, 순색량 5~10 · 저층건축물은 흑색량 10`~20, 순색량 5~10	○		공통
지붕색		· 지붕색은 색상 Y60R, 흑색량 40, 순색량 40을 사용하여 통일성을 유지	○		공통
부속물		· 창틀, 베란다, 현관문, 설비시설 등의 부속물은 외장색과 동일색 또는 순색량 10이하의 저채도색을 적용	○		공통
담장, 옹벽, 펜스		· 담장, 옹벽, 펜스 등은 건축물보다 저채도색을 사용하도록 하고 과도한 그래픽 사용을 금지	○		공통
가로 시설물	기조색	· 색상Y20R, R90B / 흑색량 50~70 / 순색량 5~30 · 해안가에서는 흑색량 2~5의 고명도색을 사용 가능	○		공통
	강조색	· 색상 Y20R~Y70R, B~B50G / 흑색량 20~40 / 순색량 20~40의 범위에서 적용	○		공통

항목		지침내용	권장	필수	비고
기반 시설물	사용색	· 순응색, 조화색은 색상 Y20R, N / 흑색량 5~10 / 순색량 5~10의 색에서 사용	○		공통
	배색	· 단색으로 사용 · 가로등, 휴지통, 전화박스는 흰색 또는 곤색 (색상 R90B, 흑색60, 순색량 30)으로 적용	○		공통
임시시설물		· 임시시설물에도 가로시설물의 색범위 내에서 색채가이드 라인을 적용하여 설치	○		공통
옥외 광고물	사용색	· 바탕색은 색상 Y20R~Y40R / 흑색량 10~60 / 순색량 2~30 · 글자색은 색상 all color / 흑색량 2~85 / 순색량 2~60의 범위에서 적용	○		공통
	사용색수	· 옥외광고물은 바탕색을 건축물색과 동일색으로 하고, 2~3가지색 내에서 적용	○		공통
차양막		· 차양막과 연결구조물은 건축물 입면색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색채를 통일감 있게 사용	○		공통
건물명		· 공공건축물의 상단에 CI나 건물명 표기를 금지	○		공통

주) 비고란의 공통은 특별관리구역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

권장 (○)	지양 (×)
 <p>남프랑스풍의 테마색 적용</p>	 <p>고채도의 다양한 색 적용</p>
<p>주조색</p>  <p>보조색</p>  <p>강조색</p>  <p>사용색 범위</p>	<p>주조색</p>  <p>보조색</p>  <p>강조색</p>  <p>사용색 범위에서 벗어난 현황색</p>
 <p>유사색 적용으로 연속성 유지</p>	 <p>다양한 색 적용으로 연속성 결여</p>
 <p>저채도의 단색 적용</p>	 <p>고채도의 다양한 색 적용</p>



## 7. 야간 경관설계지침

### 기본방향

#### 색채계획과 조화로운 빛환경을 통한 야간경관 조성

- 도시경관 골격 또는 축을 형성하는 경관요소(랜드마크, 역사문화경관, 상업지역, 특화거리 등)의 야간경관을 연출하되, 도시이미지 및 색채계획과 연계하여 광원, 밝기, 색 등을 선택하도록 유도

#### 빛으로 풍부한 도시이미지를 형성하고 정체성 있는 야간경관 창출

- 공공건축물, 상징적 건축물, 역사문화경관자원, 상업지역, 특화거리 등과 같이 중점적으로 정비할 야간경관을 선정하고, 도심의 랜드마크 또는 주요 경관도로에서 시선이 집중되는 장소에 전략적으로 야간경관을 연출

#### 인간과 교감하는 빛 환경으로 인간중심의 야간경관계획

- 과도한 빛의 연출보다는 절제된 빛과 원색 지양적인 환경의 조성과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야간경관 연출로 도시의 쾌적성을 조성하고 보행자를 고려한 적정수준의 빛 환경을 제공

### 경관설계원칙

#### 빛으로 당진시의 도시 정체성을 구현

- 당진시의 정체성을 빛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가로, 상징 구조물, 건축물 등에 조명계획을 실시하고 각각의 요소들의 조화를 도모함
- 당진시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빛의 거리 조성

#### 광공해를 최소화하는 조명 디자인

- 친환경조명 및 밤하늘을 보존하는 광공해 없는 계획으로 자연과 친숙함을 유지하도록 함
- 조도 및 휘도를 융통성 있게 제어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도록 함
- 고효율의 램프를 선택하여 필요부분에만 빛을 보냄
- 유지관리가 용이한 조명방식 및 기구의 도입으로 조명관리 체계화

#### 친밀한 커뮤니티 환경조성을 위한 조명 디자인

- 보행자의 동선 및 빈도, 조망 등을 분석하여 각종 사고 및 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한 조명계획 수립
- 야간에 인간과 자연이 소통하기 위하여 친숙한 조명계획을 수립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한 매개체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장소성을 가지는 시설물 특화조명 디자인

- 야간의 장소성의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공간 및 시설물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조명계획 수립
- 다양한 야간 축제계획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 사용방법

### 목적

- 과도한 빛을 연출하기 보다는 절제된 빛과 원색지양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야간경관을 연출하여 도시의 쾌적성 확보

### 적용방법

- 경관계획 작성시 특정경관계획의 일부로 포함시켜 사용하도록 하며, 향후 경관지구지정에 따른 지구내에 야간경관지구를 설정하고 경관조명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
- 자연경관형향 협의 및 개발계획 수립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
- 주민교육과 홍보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심의시 활용
- 본 설계지침에 제시된 조명방식, 조명의 색, 조명의 밝기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사용

## 구성요소별 야간경관설계지침

### 도시적 차원

- 광원은 공간, 기능, 목적에 따라 효율 및 연색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광원을 선정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향상시키도록 함. 단, 안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지역에 관해서는 투과력을 면밀히 고려하여 광원을 선정함
- 밝기의 수준을 정하는 것은 디자인 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임. 이를 규정하는 요소는 휘도(밝기)와 반사율로, 밝기는 빛의 강도, 수량 및 사용 광원의 위치 등과 관련됨
- 조명의 휘도는 표면의 반사율, 빛의 강도, 수량, 광원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함
- 가로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술적 설계를 통해 균제도 및 효율을 극대화시킴
- 반사판은 기술적 설계를 통해 가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 지역적 차원

- 조도는 지역별 공간의 쓰임에 따르는 필요조도를 확보하고, 기능적 요구조건을 충족시키도록 함
- 밝기의 그래데이션으로 공간의 위계 설정 및 분위기를 연출함
- 기존 수변을 제외한 공간의 색온도는 3000K~4000K로 함
- 수변공간을 계획할 때는 2000K~3000K의 색온도를 유지하도록 함
- 건물의 밝기는 건축물의 특성과 주변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조화로운 범위 내에서 설정하도록 함
- 반사판의 조명방식은 컷오프가 고려된 조명방식을 기준으로 하되 공간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직접 및 간접 조명방식과 전반확산방식을 고려함

### 요소적 차원

- 광원은 기술의 발달에 따른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높은 광량과 와트수가 낮은 광원의 사용을 권장함
- 광원은 친환경 소재인 태양광을 축전할 수 있는 태양전지의 파워와 기능을 점검하고 효율성을 검토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 LED광원은 형광등을 대체할 차세대 광원으로 친환경적이며 고효율과 비용절감을 꾀할 수 있음
- 인공 구조물은 대상물의 재료 및 색상에 따라 3000K~4000K로 함
- 반사판은 루버 및 액세서리를 이용하여 눈부심 방지를 제안함



공원의 야간경관



공공시설물 야간경관



해안가 야간경관



아파트 상층부 야간조명



육교 조명 설치로 안전한 보행로 조성



분위기있는 산책로 야간경관 조성

### 용도별 야간경관 설계지침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주거지역	• 야간의 주거환경 보호와 방법을 위해 50~70lx의 조도로 차분하고, 동적인 빛으로 연출	○	
	• 공동주택 진입문주, 녹지, 화당 등에 조명 연출	○	
	• 단지내 주요 보행로에 보행등을 설치하여 동선 유도	○	
상업지역	• 상층부의 라인을 강조하는 형태는 지양하고 전체적 윤곽을 드러내는 조명 지향	○	
	• 옥외광고물 보다는 쇼윈도우를 활용한 조명 유도	○	
	• 가로에 접한 외부공지에 수목, 녹지 등에 야간조명	○	
공업지역	• 가로변에 투광기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한 지중화 유도	○	
	• 삭막한 야간경관이 되지 않도록 20m이상의 가로변은 조명설치	○	
녹지지역	• 거대벽면 및 담장에는 은은한 조명 설치로 차분한 야간경관 형성	○	
	• 공간감을 인지할 수 있는 바닥조명 유도	○	
	• 가로등, 블라드조명, 이벤트조명 등을 활용	○	
	• 수목의 높이에 방해 받지 않는 조명 설치	○	

주) 도시, 농어촌 공통 적용

## 요소별 야간경관 설계지침7)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건축물	공통	· 직접광원의 노출 지양	○	
		· 조명기구가 노출되어 건축물의 미관을 해치지 않아야 함	○	
		· 현란한 빛의 움직임(색상, 밝기변화, 반복점멸) 지양	○	
		· 건축물의 품격을 훼손하는 원색계열의 색상사용 제한	○	
		· 옥탑부만 과도하게 강조하는 조명 지양(빛의 레벨 조화 유도)	○	
		· 건축물 조명으로 주변 건축물에 빛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함	○	
	주거 건축물	· 실내조명과 경관조명을 함께 고려하여 조화 유도	○	
		· 저층은 블라드를 이용한 고급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	○	
		·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하는 휴먼스케일의 방식을 적용	○	
		· 상층부만의 조명을 지양하고 중층 주거의 경우 조명을 제한		○
	상업 건축물	· 공동주택 측벽을 강조하는 조명 설치		
		· 투광기는 고층 주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지양		○
		· 상업지역의 가로는 최소 가로조명(보안등)으로 평균조도를 유지	○	
		· 쇼윈도의 조명은 일반적으로 전반조명과 국부조명을 적절히 배치하며 두 조명의 색온도와 조도 강약의 조화가 중요	○	
		· 쇼윈도 조명시간을 일정시간까지 연장하여 커뮤니티를 확보	○	
		· 자동 점멸등 시스템을 도입하고 감광장치를 사용하여 에너지 및 유지비를 절약하도록 함	○	
	공공 건축물	· 많은 통행량을 고려해 방해가 되는 등주 조명보다는 건물벽면에 부착하는 형식을 권장함	○	
		· 분위기에 맞는 색온도 연출로 친근하고 활기 있는 분위기를 연출	○	
		· 야간활동(산책&스포츠)을 고려하여 충분한 밝기를 확보하도록 함	○	
		· 문화예술공간, 공원, 경찰서 등에 조명을 설치하여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조성하도록 함	○	
		·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시간변화에 따른 다양한 경관을 연출함	○	
오픈 스페이스	공원	· 건축물 형태와 재료를 고려, 광원의 색온도를 3000K~4000K로 함		○
		· 우범화 방지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 조명 요소를 활용함	○	
		· 커뮤니티 밀집지역에는 라이트 포스트를 설치하고 진입부는 상대적으로 밝은 공간으로 연출	○	

7) 본 야간 경관설계지침의 내용은 특정경관계획 수립시 조정될 수 있음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오픈 스페이스	공원	· 공원의 주요 장소는 5~10lx의 조도를 원칙으로 함		○	
		· 수목의 높이에 방해받지 않는 보행자 조명등을 계획함	○		
	하천 및 해안	· 습지대 및 생태 보존 및 복원지역에는 조명 사용을 지양함		○	
		· 수변 거점 등 야간의 편안하고 쾌적한 야경연출(명소화)	○		
		· 친수지역에는 가로등, 블라드 등으로 안전성과 심미성을 고려함	○		
		· 안개 등을 고려 나트륨램프의 사용 또는 플랫폼 방식 권장	○		
		· 주요 수목에 수목등 연출	○		
		· 친수구간은 야간활동을 지원하는 70lx이상의 조도로 상쾌하고 활동적인 빛으로 연출	○		
	도시 구조물	도로	· 선적 요소의 전체 축개념에서 흐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중경 및 원경에서 고려		○
			· 가로등의 높이 및 간격 계획시 공간감과 균형 고려	○	
· 도시 진출입부나 시계부는 인지성 강화를 위한 열주식의 조명이나 관문 등에 대한 랜드마크 조명 유도			○		
· 수변산책로나 자전거도로등은 해당 도로를 따라 매립 투광 바닥조명 방식을 도입하여 방향성 제공 및 연출			○		
· 도로의 기능과 용도에 따라 램프의 종류와 조도 차별화			○		
· 배광을 조정하여 교차로 내 도로면에만 투사되도록 등기구 설치			○		
교량		· 가로등에 필요한 조도유지를 위하여 눈부심이 최소화되도록 TI를 KSA 3701도로조명기준에 맞게 엄격히 통제 <sup>8)</sup>		○	
		· 교량에 조명설치로 야간경관 특화	○		
		· 도로의 입체적 시설물로 식별성이 있는 조명 형성	○		
		· 주요도로의 교량 및 보행육교의 경우, 가로등, 난간 등 설치하여 야간 조형미 부여	○		
가로시설물	· 고가 하부 및 교량 하부에 조명을 설치하여 공간 오브제 역할 부여	○			
	· 가로수 업라이팅 연출로 상징성 부여	○			

주) 도시, 농어촌 공통 적용

8) 도로 조명시설의 구조 및 설치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도로조명기준에 의함

## 8. 간선도로 경관설계지침

### 기본방향

- 가로별 테마를 부여하여 이야기가 있는 가로경관 연출
- 상징요소로 당진시의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가로경관 연출
- 가로의 네트워크를 통해 연속적인 가로이미지 연출

### 경관설계 원칙

#### 당진시를 대표하는 상징적 가로구현

- 상징요소를 도입하여 인근도시와의 경계에 대한 인지성을 강조하고 당진시만의 가로경관 이미지를 연출
- 간선도로변 건축물 정비로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테마도로변 건축입면을 정비하여 일관적인 가로이미지 형성

#### 녹지축 연결을 통한 그린 네트워크화

- 가로변에 녹지대를 형성하여 선형 그린 네트워크를 형성

#### 가로와 가로를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형성

- 테마별 가로를 연결하여 당진시 전체를 이어주는 가로 형성

#### 야간조명 연출로 매력적인 야간경관 연출

- 가로별 테마에 적합한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시간별 경관이미지 연출

### 사용방법

#### 목적

- 가로를 하나의 요소가 아닌 전체적 컨트롤 수단으로 활용
- 당진시의 친환경적 이미지 형성을 위한 가로경관 연출

#### 적용범위

- 국도 32호선, 국도38(77)호선

#### 사용시기

- 해당 도로변 신축 및 증축, 재개발, 재건축 시 위원회 심의
- 주변 여건상 불가피하게 적용이 불가할 경우 심의시 의견서 제출

#### 적용방법

- 각종 심의, 자문, 허가시 기준으로 활용
- 주요 도로변으로 가로를 구분하고 제시된 설계지침 내에서 계획
- 별도의 주민협정에 의해 경관사업을 진행



## 국도 32호선 경관설계지침

### 당진의 상징적 가로경관

- 도시 진입부에 상징폴을 설치하고 IC부근 상징조형물 설치
- 도로변 건축물 입면 및 옥탑부 특화를 통한 상징성 부여
- 도로변 옥외광고물 정비로 쾌적하고 정리된 가로경관 연출

### 주변과 조화되는 가로경관

- 건축물의 경계부에 녹화를 도입하여 친환경적인 경관 형성
- 공동주택 축벽의 색채를 주변 자연소재와 어울리는 색상으로 도입하고 관리
- 도로에서 시각적 개방감을 위해, 도로를 따라 통경축이 확보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배치

### 녹지가 풍성한 가로경관

- 계절테마를 도입한 가로수 식재로 계절감을 부여한 가로경관 연출
- 가로수로 지역수종을 선정하여 지역성을 강조, 일관적인 이미지 연출
- 단절된 녹지부 생태이동통로를 설치하여 생태구간 복원



도시진입부 미디어폴 설치



도로변 가로수 식재



녹지 및 생태통로 연결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진입부	• 도시진입부에 상징공간의 설치	○	
	• IC 진입부에 상징이미지 연출		○
건축물	• 도로변 건축물의 입면 및 옥탑부를 특화	○	
	• 도심통과지역은 건축선 이격 후 보행공간 확보 및 미디어폴 설치		○
	• 통경축 확보를 위한 건축물 형태 및 배치	○	
	• 공동주택 축벽색채를 주변 자연소재와 어울리는 색상 선정	○	
녹화 및 식재	• 경관을 위해하는 시설의 경우 가로수 식재 등으로 차폐	○	
	• 보행가로에는 플랜터 설치 및 꽃길 조성	○	
	• 계절테마를 도입한 가로수 식재	○	
	• 지역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일관적인 이미지 연출	○	
시설물	• 단절된 녹지부 생태이동통로를 설치하여 생태구간 복원	○	
	• 통합된 시설물 디자인 연출로 일체감 부여	○	
	• 교량하부 및 측면 디자인으로 미관향상	○	
	• 도로변 옥외광고물 정비	○	
	• 보도포장은 단순한 패턴으로 적용	○	

## 국도 38(77)호선 경관설계지침

### 해안가로 이미지 연출

- 자연과 조화로운 건축물 디자인 유도
- 해안을 모티브로 한 가로시설물의 형태, 색채, 재료를 통합적으로 적용
- 해안조망이 유리한 일부구간에 꽃길 도입 및 휴게공간 조성 등 이색적인 경관 연출
- 서해대교 등 해안의 주요 조망경관을 차폐하지 않도록 건축물 및 시설물 배치

### 첨단 산업이미지 가로경관

- 공장 등 산업시설에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당진시의 이색적인 경관 연출
- 첨단이미지를 구현하는 시설물 디자인
- 도로변 옥외광고물 및 방향표지판의 통합 정비로 통일감 조성

### 풍성한 녹지가 흐르는 가로

- 8차선의 대로에 의해 단절된 녹지의 흐름을 완충녹지로 연결
- 특히 주변 산업단지 등 인공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경계부에 집중 식재
- 중앙분리대를 활용한 녹지대를 조성하여 녹지가 흐르는 도로구현



해안조망공간 조성



산업시설의 야간경관 연출



중앙분리대를 활용한 녹지대 조성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건축물	• 자연과 조화로운 건축물 디자인 유도(국적을 알 수 없는 디자인 지양)	○	
	• 경관을 위해하는 건축물의 경우 가로수 식재 등으로 차폐	○	
	• 공장 등 산업시설에 조명설치로 이색적인 야간경관 연출	○	
녹지 및 식재	• 해안경관과 조화로운 수종을 선정하여 테마가로수길 연출	○	
	• 중앙분리대를 활용한 녹지대 조성	○	
	• 건축물의 경계부에 녹화를 도입하여 친환경적인 경관 형성	○	
시설물	• 교량하부 및 측면디자인으로 미관향상	○	
	• 첨단이미지의 통합된 시설물로 일체감 부여	○	
	• 도로변 옥외광고물 통합 정비	○	
	• 보도포장은 자연소재와 어울리는 저채도 색상으로 적용	○	



## 9. 조망 경관설계지침

### 기본방향

- 배후산지로의 조망을 최대한 살린 조망경관 연출
- 주요조망장소의 테마부여를 통한 조망장소의 명소화
- 주요 수변경관으로 열린 시각적 통로 확보

### 경관설계원칙

#### 배후산지로의 조망확보를 통한 녹색풍경 조성

- 도시전체의 배후를 이루고 있는 산지로의 조망확보를 위해 신규건축물 높이 및 배치 규제

#### 변화있는 도시 스카이라인 형성

- 아미산, 몽산, 다불산 등 주요산지와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도시 전체 스카이라인의 변화감 부여

#### 선적공간에서의 통경축 확보

- 32번국도 등 주요간선도로와 하천 및 해안축을 따라 조망이 가능하도록 통경축을 확보

#### 구릉지경관으로의 열린 조망 확보

- 양호한 구릉지 경관의 보전을 위해 자연지형과 조화를 이루는 조망계획 수립

#### 개방감 있는 수변경관 연출

- 당진천 등의 하천 및 포구 등의 해안가에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한 건축물 배치 유도

### 사용방법

#### 목적

- 단일 조망점 관리가 아닌 도시 전체 공간의 조망 관리
- 주요 생활권을 위요하고 있는 배후산지로의 지속적인 조망경관 연출

#### 적용범위

- 분석을 통해 설정된 주요조망점
- 중점관리조망점을 기준으로 한 조망 통경축

#### 사용시기

- 해당 조망축 및 조망점 내 신축 및 증축, 재개발, 재건축시

#### 적용방법

- 각종 심의, 자문, 허가 시 기준으로 활용
- 중점관리 조망점 설계지침에 따라 계획

## 중점관리조망점 경관설계지침

### 산지조망형 조망점(아미산, 다불산, 오봉산)

- 배후 구릉지 능선과 조화로운 건축물 배치 유도
- 공동주택단지나 상업건축물의 이격배치를 통한 통경축 확보
- 산지와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신규건축물 높이 제한 및 개발예상지의 경관고도 규제

### 수변조망형 조망점(석문호, 대호지, 삼교호)

- 해안의 건축물들에 있어서 저층배치를 유도하고, 필요시 사선제한으로 전면 또는 측면의 개방감 확보

### 부감조망형 조망점

- 조망점 내 안내판, 계단 등 노후시설 교체 및 조망장소 정비
- 보행 및 차량 접근로, 주차장 설치, 주변 건축물 관리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산지조망점	• 배후구릉지 능선과 조화로운 건축물 배치를 유도		○
	• 공동주택단지나 상업건축물의 이격배치를 통한 통경축을 확보		○
	• 산지와와의 조화를 위해 신규건축물 높이제한 및 개발예상지 고도규제		○
수변형조망점	• 저수지 및 하천변 건축물의 저층배치를 유도	○	
부감형조망점	• 조망점 내 안내판 교체 및 계단 등 노후시설 교체	○	
	• 조망점 내 식재 수종 교체 등의 조망장소 정비	○	
	• 보행 및 차량 접근로, 주차장을 설치하고, 주변 건축물을 관리	○	

## 통경축 경관설계지침

### 조망형 통경축

- 당진시청과 아미산을 연결하는 조망통경축 확보
- 당진터미널에서 당진시청을 잇는 도로에서 30m이상의 통경구간 설정



### 개방형 통경축

- 추후 개발될 통경구간 내 건축물은 주변 산지와 조화롭도록 높이 및 형태, 배치, 색채 등을 설정
- 통경구간내 건축선 이격 및 U자형 스카이라인을 설정하여 주변 산지와 조화로운 경관 연출



구분	지침내용	권장	필수
조망형 통경축	• 당진시청과 아미산을 연결하는 조망통경축 확보	○	
	• 당진터미널에서 당진시청을 잇는 도로에서 30m이상의 통경구간 설정	○	
개방형 통경축	• 신규개발시 주변 농경지와 조화롭도록 높이 및 형태, 배치 등 설정	○	
	• 통경구간내 건축물은 U자형 스카이라인 설정하고 개방감 확보	○	